전라북도교육청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7 전라북도 학생 인권 실태 조사

전라북도교육청

제 출 문

전라북도 교육감 귀하

이 보고서를 2017년도 연구 용역 사업「2017 전라북도 학생 인권 실태 조사」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12.

(재)한국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정 동 건

이 연구는 전라북도교육청 연구지원비로 수행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팀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신 준 섭 (재단법인 한국교육문화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종 태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연구위원)

허 은 주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이 방 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연구협력관 염 규 홍 (전라북도교육청 사무관)

목 차

<표목차>

제 1 장
개 요

제 1 장
개　　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013년 7월 제정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전라북도 조례 제3791호)는 국가 차원의 인권 담론을 지역 수준으로 끌어들여서 토착화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해왔다. 특히,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 기본적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학습에 관한 권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 학생 인권에 있어서 국제적 표준에 입각한 전향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된 후 2013년 같은 해에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전라북도교육청 교육규칙 제703호)를 제정하고, 2014년 11월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4-324호, 2015년 2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규칙 제735호에 의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조례가 학교 내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을 문화로 토착화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집단적, 지역적, 이념적으로 조례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시각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인권 실태 및 교육주체의 인권의식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 인권실태조사는 2015년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2015년에 이루어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의 요소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인권상황 및 인권감수성을 파악하며, 인권이

교육공동체의 삶 속에 체화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의 의식을 개선시키는 현실적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3조에서는 “교육감은 매년 전라북도 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인권 교육에 반영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전라북도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사는 이러한 규정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2013년 제정되고 2015년에 실시된 이후 연장하여 실시되는 조사이다. 그리고 이 조사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서 아동 및 청소년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가 행해지고 있기에 다른 조사 결과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는 교육공동체의 학생인권에 대한 실태 및 인권감수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다른 집단과는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자들은 인권관련 활동을 하며 인권강사로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참여한 전적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이후 실제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책들은 효과적인지, 다른 지역 또는 집단에 비해 특이한 경향은 어떻게 왜 나타나고 있는지 연구자로서의 호기심이 풍부하며, 다른 집단과의 비교 연구가 가능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인권정책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을 넘어서 연구자로서 엄밀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되, 학생인권과 교권을 존중하는 전라북도의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제시에 가치와 목표를 두고 정확한 정책 제안을 보고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가. 전라북도 인권실천 계획 및 인권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확보

전라북도 학생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교육청 및 학교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 인권 관련 업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전북 학생 인권 실천 계획 및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나. 학생인권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 검토하여 발전적 정책 방향 제시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생 인권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인권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전북 학생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문항 개발

설문문항은 전라북도교육청이 기 수행한 2015 학생인권실태조사 설문문항 개발 연구 보고서를 기본 근거로 하였으며, 그 이외에 서울, 경기, 충남, 대전 등의 타시도 교육청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인권교육센터 '들'의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등의 결과를 토대로 구성함.

나. 학생 인권 실태에 대한 교육 주체별·영역별 조사 및 분석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인권관련 정책들의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고 학생 및 교사가 직접 인식하는 인권 문제들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세부적인 실태 및 인식을 조사 분석함.

다.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정책 수립 방안 제시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통해 각 항목에 나타난 정책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 해결방안과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함. 이렇게 제시된 정책은 향후 학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며 학생들이 바른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시민으로서의 기초소양을 갖추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

2. 연구의 방법

가. 문헌 연구

2015 전라북도 학생인권실태조사 설문문항 개발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 경기, 충남, 대전 등의 타시도 교육청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음. 아울러 최근 화두가 된 현장실습학생의 사망사건과 구정화(2017)가 연구한 “고등학생의 청소년 노동권리 인지 및 침해경험 관련 요인 분석” 및 2016년 경향신문의 노동 감수성 조사 등의 문헌을 수집 및 분석하여 최종 설문문항을 개발하였음.

나. 전문가 자문

연구의 방향 설정 및 조사 방법 개발, 조사 수행, 결과 분석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음.

전라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인권관련 전문가 자문단으로부터 연구과정에서 수시로 의견을 전해 받는 과정을 진행함. 이를 통해 전라북도교육청의 실태에 맞는 인권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내실 있는 설문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었음.

제 3 절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1. 기대효과

가. 학생 인권 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유지

학생 인권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이해정도와 실행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학생 인권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음.

나.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책무성 제고

지금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한 인권교육을 통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를 기획할 수 있을 것임. 현행 학생인권 보장 관련 문제점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인권 정책 업무의 효율성 제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수행해 오던 학생인권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인권관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2. 활용 방안

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학교 현장 안착 방안 제시

학생, 교사의 설문조사는 물론 관련 전라북도 학생인권 현장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나. 학생인권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자료 제공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현 실태를 조사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평가 방안을 모색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류 자료로 활용될 것임.

다.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전라북도 학생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학생 인권보장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의 특성을 고려하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중장기적 학생 인권 정책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임.

제 2 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 2 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 1 절 조사배경

1. 조사목적

- 전라북도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요구 조사・분석
-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중심의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 정책 방안 지원

2. 조사 대상 및 표집

□ 전라북도 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 전수조사

□ 대상별/학교급별 조사 대상 표집

 – 공문을 통한 학교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교원

□ 조사 대상 응답자 현황

<표Ⅱ-1> 조사 배경

구분		대상자수	비율	비고
학교 유형별	초등학교	2364	54.6%	
	공립중학교	708	16.3%	
	사립중학교	221	5.1%	
	공립고등학교	531	12.3%	
	사립고등학교	507	11.7%	
	총계	4331	100%	
학교급별	초등학교	2364	54.6%	
	공사립중학교	929	21.5%	
	공사립고등학교	1038	24.0%	
	총계	4331	100%	
대상자별	초등학교 학생	1435	33.1%	
	중학교 학생	448	10.3%	
	고등학교 학생	650	15.0%	
	교원	1798	41.5%	
	총계	4331	100%	

	초등학교 교원	929	51.7%	
	공립중학교 교원	386	21.5%	
	사립중학교 교원	80	4.4%	
	공립고등학교 교원	205	11.4%	
	사립고등학교 교원	198	11.0%	
	총계	1798	100%	
	초등학교 교원	929	51.7%	
	공사립중학교 교원	466	25.9%	
	공사립고등학교교원	403	22.4%	
	총계	1798	100%	
학생 학년별	초등학교 4학년	507	20.0%	
	초등학교 5학년	534	21.1%	
	초등학교 6학년	394	15.6%	
	중학교 1학년	129	5.1%	
	중학교 2학년	201	7.9%	
	중학교 3학년	118	4.7%	
	고등학교 1학년	253	10.0%	
	고등학교 2학년	368	14.5%	
	고등학교 3학년	29	1.1%	
	총계	2533	100%	
학생 학교급별	초등학생	1435	56.7%	
	공사립중학생	463	18.3%	
	공사립고등학생	635	25.1%	
	총계	2533	100%	
교원 근무연수 별	4년이하	341	19.0%	
	5년이상-9년이하	329	18.3%	
	10년이상-19년이하	480	26.7%	
	20년 이상	648	36.0%	
	총계	1798	100%	
지역별	시지역 이상	2796	64.6%	
	군지역 이하	1535	25.4%	
	총계	4331	100%	

3. 조사 일시

내 용	일 정	비 고
설문 응답	2017. 12.12(화) ~ 12.21(목)	- 각 급 학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원
설문결과 분석	2017. 12.22 ~ 12.25	- 인권교육 실태조사 연구원 담당자
설문분석 결과 최종 협의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인권교육센터 자문위원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2017. 12.27	- 인성건강과 담당자

4. 조사 절차

□ 설문 시스템 구축

- 전라북도교육연구원의 통계설문시스템인 유레카 시스템을 통한 설문 시스템 구축
-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1) 초등학생 4~6학년

http://www.statschool.net/answer.jsp?a=8384

2) 중·고등학생 1~3학년

http://www.statschool.net/answer.jsp?a=8378

3) 초중고교원

http://www.statschool.net/answer.jsp?a=8365

□ 설문 참여

- 설문 응답자는 공문에 링크되어 있는 주소를 클릭하여 설문에 접속
- 각 문항에 끝까지 응답 후 『보내기』 버튼 클릭

5. 조사 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실태 분야	문항수		
	초	중고	교원
· 학생인권보장 제도에 대한 일반적 요구	3	3	3
· 학교인권에 대한 일반적 요구	7	9	8
· 인권관련 학교생활에 대한 요구	14	19	11
· 인권관련 학교와 가정에서 경험한 현황	4	4	2
·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2	3	3
총문항수	**30**	**38**	**27**

□ 설문지 문항 구성

순	문항	초등 학생 문항 번호	중고등 학생 문항 번호	교원용 문항 번호	비고
1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1	1	1	○

2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2	2	2	○
3	전라북도교육청에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나요?	3	3	3	○
4	학교운영에 교사들의 참여가 높다.			4	◇
5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4	4		□
6	학교에서 학생들은(교사들은) 인권을 보호받는다.	5	5	5	○
7	교사는 학생이 잘못하면 체벌을 할 수 있다.	6	11	11	○
8	나는 인권감수성이 높다.		6	6	△
9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을 규제해야 한다.	7	10	10	○
10	수업중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어야 한다.	8	9	9	○
11	학생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9	7	7	○
12	공부를 잘 하면 급식을 먼저 받아야 한다.(성적이 우수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	10	12		□
13	학생은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	8	△
14	우리 학교는 (지도방법으로) 반성문이나 각서를 강요한다.	11	13	12	○
15	우리 학교는 (흡연이나) 도난사고를 이유로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검사를 한다.	12	14	13	○
16	우리 학교는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조건(성적, 출결, 징계 등)이 있다.	13	15	14	○
17	우리 학교는 학교 행사를 학생들이 계획하고 진행한다.	14	16	15	○
18	우리 학교는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을 규제한다.	15	17	16	○
19	우리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는다.	16	18	17	○
20	우리 학교는 학생의 성적으로 차별한다.	17	19		□
21	우리 학교는 학생의 성적을 공개한다.			18	◇
22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를 한다.	18	20	19	○
23	우리 학교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19	21	20	○
24	우리 학교는 방과후 학교 (또는 야간자율학습)를 강제로 해야 한다.(강요하고 있다.)	20	22		□
25	우리 학교는 학교게시판이나 누리집(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의견을 쓸 수 있다.	21	23		□
26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한다.	22	24		□
27	우리 학교는 보건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23	25		□
28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26		♧
29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26-1		♧
30	나는 다음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26-2		♧
31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다.		27	21	△

32	우리 학교는 학생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4	28		□
33	우리학교는 교사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2	◇
34	교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23	◇
35	현재 우리나라 선거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선거권 연령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29	24	△
36	나는 학교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25	30		□
37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26	31		□
38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27	32		□
39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28	33		□
40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선택하여 주세요.		34	25	△
41	학생의 학년은	29	35		□
42	선생님의 근무년수는			26	◇
43	학생이 현재 다니는 학교의 지역은	30	36	27	○

○ 초중고학생, 교원(17) □ 초중고학생(13) △중고학생, 교원(5) ◇ 교원(5) ♧중고학생(3)

6. 통계 처리

- 전라북도 학생 인권 실태 조사 분석
  - 학교급별/학교유형별/대상별/소재지별/급무지별/학년별/재직연수별로 교차분석
- 분석 결과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인권교육지원센터 인권교육 정책 개발 지원 및 정책 수립 시사점 도출

제 2 절 학생인권보장 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

1.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주체의 인식 정도(초중고학생, 교원)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Ⅱ-2>와 같음

▣ 전체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과 교원의 인식 정도는 “일부내용을 알고 있다”(32.3%), “처음 들어본다”(25.3%), ”잘 알고 있다“(21.8%), ”이름만 알고 있다“(20.7%) 순으로 나타남. 2013년 7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5년이 경과된 것에 비해 이해의 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대상별, 교원의 재직연수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학교급별 : 초등학교는 “일부내용을 알고 있다”(21.9%), 중학교도 “일부내용을 알고 있다”(26.5%), 고등학교도 “일부 내용을 알고 있다”(17.3%)로 중, 초, 고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X^2=50.453, p<.001).
- 대상별 : 초등학생은 “처음 들어본다”(43.1%), 중학생은 “처음 들어본다”(39.3%), 고등학생도 “처음 들어본다(44.6%), 교원은 ”일부내용을 알고 있다“(50.6%)로 대체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나타남(X^2=1350.110, p<.001). 초중고학생에 비해 교원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해 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X^2=1350.110, p<.001).
- 재직연수별 : 교원의 재직연수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해 정도는 4년이하 “활용한다”(54.3%), 5년이상-9년이하 “활용한다”(48.6%), 10년이상-19년이하 “활용한다”(49.2), 20년이상 “활용한다”(50.6%) 순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X^2=75.507, p<.001)

<표Ⅱ-2>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주체의 인식 정도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잘 알고 있다.	일부내용을 알고 있다.	이름만 알고 있다.	처음 들어본다.	계	
학교급별	초등학교	517 (21.9) (11.9)	725 (16.7) (16.7)	498 (11.5) (11.5)	624 (14.4) (14.4)	2364 (100.0) (54.6)	X^2=50.453*** df=6 p=.000
	중학교 (공사립)	246 (26.5) (5.7)	341 (36.7) (7.9)	157 (16.9) (3.6)	185 (19.9) (4.3)	929 (100.0) (21.5)	
	고등학교 (공사립)	180 (17.3) (4.2)	330 (31.8) (7.6)	243 (23.4) (5.6)	285 (27.5) (6.6)	1038 (100.0) (24.0)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200 (13.9) (4.6)	274 (19.1) (6.3)	342 (23.8) (7.9)	619 (43.1) (14.3)	1435 (100.0) (33.1)	X^2=1350.110*** df=9 p=.000
	중학생 (1-3학년)	73 (16.3) (1.7)	96 (21.4) (2.2)	103 (23.0) (2.4)	176 (39.3) (4.1)	448 (100.0) (10.3)	

	고등학생 (1-3학년)	57 (8.8) (1.3)	117 (18.0) (2.7)	186 (28.6) (4.3)	290 (44.6) (6.7)	650 (100.0) (100.0)	
	교원 (초중고)	613 (34.1) (14.1)	909 (50.6) (21.0)	267 (14.8) (6.2)	9 (0.5) (0.2)	1798 (100.0) (41.5)	
소재지별	시지역	587 (21.0) (13.6)	921 (32.9) (21.3)	567 (20.3) (13.1)	721 (25.8) (16.6)	2796 (100.0) (64.6)	X^2=5.079 df=3 p=.166
	군지역	356 (23.2) (8.2)	475 (30.9) (11.0)	331 (21.6) (7.6)	373 (24.3) (8.6)	1535 (100.0) (35.4)	
총계		943 (21.8)	1396 (32.3)	898 (20.7)	1094 (25.3)	4331 (100.0)	-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잘 알고 있다.	일부내용을 알고 있다.	이름만 알고 있다.	처음 들어본다.	계	
근무급별	초등교사	317 (34.1) (17.6)	451 (48.5) (25.1)	156 (16.8) (8.7)	5 (0.5) (0.3)	929 (100.0) (51.7)	X^2=12.239 df=6 p=.057
	중등교사 (공사립)	170 (36.5) (9.5)	245 (52.6) (13.6)	50 (10.7) (2.8)	1 (0.2) (0.1)	466 (100.0) (25.9)	
	고등교사 (공사립)	126 (31.3) (7.0)	213 (52.9) (11.8)	61 (15.1) (3.4)	3 (0.7) (0.2)	403 (100.0) (22.4)	
재직연수	4년이하	68 (19.9) (3.8)	185 (54.3) (10.3)	85 (24.9) (4.7)	3 (0.9) (0.2)	341 (100.0) (19.0)	X^2=75.507*** df=9 p=.000
	5년이상- 9년이하	111 (33.7) (6.2)	160 (48.6) (8.9)	55 (16.7) (3.1)	3 (0.9) (0.2)	329 (100.0) (18.3)	
	10년이상- 19년이하	170 (35.4) (9.5)	236 (49.2) (13.1)	72 (15.0) (4.0)	2 (0.4) (0.1)	480 (100.0) (26.7)	
	20년 이상	264 (40.7) (14.7)	328 (50.6) (18.2)	55 (8.5) (3.1)	1 (0.2) (0.1)	648 (100.0) (36.0)	
총계		613 (34.1)	909 (50.6)	267 (14.8)	9 (0.5)	1798 (100.0)	-

* p<.05, ** p<.01, *** p<.001

2.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 주는 정도(초중고학생, 교원)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Ⅱ-3>와 같음

▣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학생과 교원은 “그렇다”(79.5%), “그렇지 않다”(20.5%) 순으로 나타남.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대상별, 교원의 근무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학교급별 : 초등학교는 “그렇다”(85.5%), 중학교도 “그렇다”(77.4%), 고등학교도 “그렇다”(67.8%)로 가장 높게 나타남(X^2=142.384, p<.001).
- 대상별 : 초등학생 “그렇다”(90.5%), 중학생 “그렇다”(79.9%), 고등학생 “그렇다”(67.5%), 교원 ”그렇다“(75.0%)로 대체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초등학교 학생에 비해 중고등학교 학생이 다소 낮게 나타났음(X^2=186.441, p<.001).
- 교원의 근무급별 : 교원의 근무급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초등교사 “그렇다.”(77.8%), 중등교사 “그렇다”(75.1%), 고등교사 “그렇다”(68.5%)순으로 초중고 교사 순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나타남(X^2=13.087, p<.01).

<표Ⅱ-3>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 주는 정도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학교급별	초등학교	2022 (85.5) (46.7)	342 (14.5) (7.9)	2364 (100.0) (54.6)	X^2=142.384*** df=2 p=.000
	중학교 (공사립)	719 (77.4) (16.6)	210 (22.6) (4.8)	929 (100.0) (21.5)	
	고등학교 (공사립)	704 (67.8) (16.6)	334 (32.3) (7.7)	1038 (100.0) (24.0)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1299 (90.5) (30.0)	136 (9.5) (3.1)	1435 (100.0) (33.1)	X^2=186.441*** df=3 p=.000
	중학생 (1-3학년)	358 (79.9) (8.3)	90 (20.1) (2.1)	448 (100.0) (10.3)	
	고등학생 (1-3학년)	439 (67.5) (10.1)	211 (32.5) (4.9)	650 (100.0) (15.0)	
	교원 (초중고)	1349 (75.0) (31.1)	449 (25.0) (10.4)	1798 (100.0) (41.5)	
소재지별	시지역	2232 (79.8) (51.5)	564 (20.2) (13.0)	2796 (100.0) (64.6)	X^2=0.395 df=1 p=.530
	군지역	1213 (79.0) (28.0)	322 (21.0) (7.4)	1535 (100.0) (35.4)	
총계		3445 (79.5)	886 (20.5)	4331 (100.0)	-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근무 급별	초등교사	723 (77.8) (40.2)	206 (22.2) (11.5)	929 (100.0) (51.7)	X^2=13.087** df=2 p=.001
	중등교사 (공사립)	350 (75.1) (19.5)	116 (24.9) (6.5)	466 (100.0) (25.9)	
	고등교사 (공사립)	276 (68.5) (15.4)	127 (31.5) (7.1)	403 (100.0) (22.4)	
재직연수	4년이하	254 (74.5) (14.1)	87 (25.5) (4.8)	341 (100.0) (19.0)	X^2=3.232 df=3 p=.357
	5년이상-9년이하	235 (71.4) (13.1)	94 (28.6) (5.2)	329 (100.0) (18.3)	
	10년이상-19년이하	365 (76.0) (20.3)	115 (24.0) (6.4)	480 (100.0) (26.7)	
	20년 이상	495 (76.4) (27.5)	153 (23.6) (8.5)	648 (100.0) (36.0)	
총계		1349 (75.0)	449 (25.0)	1798 (100.0)	-

* p<.05, ** p<.01, *** p<.001

3.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인식 정도(초중고학생, 교원)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식하는 있는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Ⅱ-4>와 같음

▣ 전체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해 학생과 교원은 “알고 있다.”(56.4%), “모른다”(43.6%) 순으로 나타남.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에 대해 43.6%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대상별, 소재지별, 교원의 근무급별, 재직연수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학교급별 : 초등학교는 “알고 있다.”(56.6%), 중학교도 “알고 있다.”(62.9%), 고등학교는 “알고 있다”(49.9%), “모른다”(50.1%)로 나타남(X^2=33.643, p<.001).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에 대해 초중고 학생과 교원이 다소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 : 초등학생 “모른다.”(57.4%), 중학생 “모른다”(57.8%), 고등학생 “모른다”(70.8%), 교원 ”알고 있다.“(80.7%)로 대체적으로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에 대해 교사는 알고 있는 반면에 학생들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X^2=775.025, p<.001).
- 교원의 근무급별 : 교원의 근무급별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는 초등교사 “알고 있다..”(78.4%), 중등교사 “알고있다”(84.8%), 고등교사 “알고있다”(81.4%) 순으로 초등교사에 비해 중,고등학교 교원이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X^2=8.320, p<.05).
- 재직연수별 : 교원의 재직연수별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는 4년이하 “알고 있다.”(63.9%), 5년이상-9년이하 “알고있다”(71.4%), 10년이상-19년이하 “알고있다”(82.9%), 20년 이상 “알고 있다”(92.6%)로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X^2=140.095, p<.001). 경력이 많을수록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Ⅱ-4>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인식 유무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알고 있다.	모른다.	계	
학교 급별	초등학교	1339 (56.6) (30.9)	1025 (43.4) (23.7)	2364 (100.0) (54.6)	X^2=33.643*** df=2

	중학교 (공사립)	584 (62.9) (13.5)	345 (37.1) (8.0)	929 (100.0) (21.5)	p=.000
	고등학교 (공사립)	518 (49.9) (12.0)	520 (50.1) (12.0)	1038 (100.0) (24.0)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611 (42.6) (14.1)	824 (57.4) (19.0)	1435 (100.0) (33.1)	X^2=775.025*** df=3 p=.000
	중학생 (1-3학년)	189 (42.2) (4.4)	259 (57.8) (6.0)	448 (100.0) (10.3)	
	고등학생 (1-3학년)	190 (29.2) (4.4)	460 (70.8) (10.6)	650 (100.0) (15.0)	
	교원 (초중고)	1451 (80.7) (33.5)	347 (19.3) (8.0)	1798 (100.0) (41.5)	
소재지별	시지역	1546 (55.3) (35.7)	1250 (44.7) (28.9)	2796 (100.0) (64.6)	X^2=3.657* df=1 p=.030
	군지역	895 (58.3) (20.7)	640 (41.7) (14.8)	1535 (100.0) (35.4)	
총계		2441 (56.4)	1890 (43.6)	4331 (100.0)	-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알고 있다.	모른다.	계	
근무 급별	초등교사	728 (78.4) (40.5)	201 (21.6) (11.2)	929 (100.0) (51.7)	X^2=8.320* df=2 p=.016
	중등교사 (공사립)	395 (84.8) (22.0)	71 (15.2) (3.9)	466 (100.0) (25.9)	
	고등교사 (공사립)	328 (81.4) (18.2)	75 (15.2) (4.2)	403 (100.0) (22.4)	
재직연수	4년이하	218 (63.9) (12.1)	123 (36.1) (6.8)	341 (100.0) (19.0)	X^2=140.095*** df=3 p=.000
	5년이상-9년이하	235 (71.4) (13.1)	94 (28.6) (5.2)	329 (100.0) (18.3)	
	10년이상-19년이하	398 (82.9) (22.1)	82 (17.1) (4.6)	480 (100.0) (26.7)	
	20년 이상	600 (92.6) (33.4)	48 (7.4) (2.7)	648 (100.0) (36.0)	
총계		1451 (80.7)	347 (19.3)	1798 (100.0)	-

* $p<.05$, ** $p<.01$, *** $p<.001$

제 3 절 학교인권에 대한 일반적 실태 분석

1. 학교운영에 대한 교원들의 참여도(교원)

학교운영에 대한 교원들의 참여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Ⅱ-5>와 같음

▣ 전체적으로 학교운영에 대한 교원들의 참여 정도는 “그렇다.”(50.3%), “매우 그렇다”(38.9%), “그렇지 않다”(9.7%), “전혀 그렇지 않다”(1.2%) 순으로 나타남. 교원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 급별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학교급별 : 초등학교는 “매우 그렇다”(49.5%), “그렇다”(44.0%) 중학교 “매우 그렇다”(33.3%), “그렇다.”(55.6%), 고등학교 “매우 그렇다”(20.8%), “그렇다”(58.6%)로 나타남(X^2=147.493, p<.001). 초등학교 교원들이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정도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순으로 나타남.
- 재직연수별 : 재직연수별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통계상으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는 4년이하 “매우 그렇다”(39.0%), “그렇다.”(53.7%), 5년이상-9년이하 “매우 그렇다”(41.0%), “그렇다”(48.9%), 10년이상-19년이하 “매우 그렇다”(40.0%), “그렇다”(49.8%), 20년 이상 “매우 그렇다”(36.9%), “그렇다”(49.5%) 로 재직연수에 관계없이 비교적 학교운영 참여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Ⅱ-5> 학교운영에 대한 교원들의 참여도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학교급별	초등학교	460	409	57	3	929	X^2=147.493*** df=6 p=.000
		(49.5)	(44.0)	(6.1)	(0.3)	(100.0)	
		(25.6)	(22.7)	(3.2)	(0.2)	(51.7)	
	중학교	155	259	50	2	466	

	(공사립)	(33.3)	(55.6)	(10.7)	(0.4)	(100.0)	
		(8.6)	(14.4)	(2.8)	(0.1)	(25.9)	
	고등학교 (공사립)	84	236	67	16	403	
		(20.8)	(58.6)	(16.6)	(4.0)	(100.0)	
		(4.7)	(13.1)	(3.7)	(0.9)	(22.4)	
소재지별	시지역	432	603	123	15	1173	X^2=7.1291 df=3 p=.068
		(24.0)	(33.5)	(6.8)	(0.8)	(100.0)	
		(24.0)	(33.5)	(6.8)	(0.8)	(65.2)	
	군지역	267	301	51	6	625	
		(42.7)	(48.2)	(8.2)	(1.0)	(100.0)	
		(14.8)	(16.7)	(2.8)	(0.3)	(34.8)	
재직연수	4년이하	133	183	22	3	341	X^2=14.602 df=9 p=.102
		(39.0)	(53.7)	(6.5)	(0.9)	(100.0)	
		(7.4)	(10.2)	(1.2)	(0.2)	(19.0)	
	5년이상 -9년이하	135	161	27	6	329	
		(41.0)	(48.9)	(8.2)	(1.8)	(100.0)	
		(7.5)	(9.0)	(1.5)	(0.3)	(18.3)	
	10년이상 -19년이하	192	239	43	6	480	
		(40.0)	(49.8)	(9.0)	(1.3)	(100.0)	
		(10.7)	(13.3)	(2.4)	(0.3)	(26.7)	
	20년 이상	239	321	82	6	648	
		(36.9)	(49.5)	(12.7)	(0.9)	(100.0)	
		(13.3)	(17.9)	(4.6)	(0.3)	(36.0)	
총계		699	904	174	21	1798	-
		(38.9)	(50.3)	(9.7)	(1.2)	(100.0)	

* $p<.05$, ** $p<.01$, *** $p<.001$

2.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 반영 정도(초중고학생)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Ⅱ-6>와 같음

▣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에 대해 초중고 학생은 “그렇다.”(58.1%), “매우 그렇다”(27.3%), “그렇지 않다”(10.7%), “전혀 그렇지 않다”(3.9%) 순으로 나타남.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학교급별 : 초등학교는 “매우 그렇다”(35.7%), “그렇다.”(56.9%), 중학교 “매우그렇다”(20.3%), “그렇다.”(11.0%), 고등학교 “매우 그렇다”(13.4%), “그렇다”(14.9%)로 나타남(X^2=244.007, p<.00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년별 학생의견 반영 정도는 초등 4학년 “그렇다.”(57.0%), 초등 5학년 “그렇다”(57.9%), 초등 6학년 “그렇다”(55.6%), 중1학년 “그렇다”(62.8%), 중2학년 “그렇다”(63.7%), 중3학년 “그렇다”(50.0%), 고1학년 “그렇다”(60.9%), 고2학년 ”그렇다“(59.0%), 고3학년 “그렇다”(55.2%)로 학교에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남(X^2=263.891, p<.001).

<표Ⅱ-6>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 반영 정도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학교급별	초등학교	513 (35.7) (20.3)	817 (56.9) (32.3)	79 (5.5) (3.1)	26 (1.8) (1.0)	1435 (100.0) (56.7)	X^2=244.007*** df=6 p=.000
	중학교(공사립)	94 (20.3) (3.7)	278 (60.0) (11.0)	62 (13.4) (2.4)	29 (6.3) (1.1)	463 (100.0) (18.3)	
	고등학교(공사립)	85 (13.4) (3.4)	377 (59.4) (14.9)	130 (20.5) (5.1)	43 (6.8) (1.7)	635 (100.0) (25.1)	
학년별	초등학생(4학년)	175 (34.5) (6.9)	289 (57.0) (11.4)	30 (5.9) (1.2)	13 (2.6) (0.5)	507 (100.0) (20.0)	X^2=263.891*** df=24 p=.000
	초등학생(5학년)	199 (37.3) (7.9)	309 (57.9) (12.2)	20 (3.7) (0.8)	6 (1.1) (0.2)	534 (100.0) (21.1)	
	초등학생(6학년)	139 (35.3) (5.5)	219 (55.6) (8.6)	29 (7.4) (1.1)	7 (1.8) (0.3)	394 (100.0) (15.6)	
	중학생(1학년)	35 (27.1) (1.4)	81 (62.8) (3.2)	8 (6.2) (0.3)	5 (3.9) (0.2)	129 (100.0) (5.1)	

	중학생 (2학년)	26 (12.9) (1.0)	128 (63.7) (5.1)	34 (6.2) (1.3)	13 (3.9) (0.5)	201 (100.0) (7.9)	
	중학생 (3학년)	33 (28.0) (1.3)	59 (50.0) (2.3)	17 (14.4) (0.7)	9 (7.6) (0.4)	118 (100.0) (4.7)	
	고등학생 (1학년)	36 (14.2) (1.4)	154 (60.9) (6.1)	50 (19.8) (2.0)	13 (5.1) (0.5)	253 (100.0) (10.0)	
	고등학생 (2학년)	41 (11.1) (1.6)	217 (59.0) (8.6)	79 (21.5) (3.1)	31 (8.4) (1.2)	368 (100.0) (14.5)	
	고등학생 (3학년)	8 (27.6) (0.3)	16 (55.2) (0.6)	4 (13.8) (0.2)	1 (3.4) (0.0)	29 (100.0) (1.1)	
소재지별	시지역	463 (28.5) (18.3)	915 (56.4) (36.1)	175 (10.8) (6.9)	70 (4.3) (2.8)	1623 (100.0) (64.1)	X^2=7.088 df=3 p=.069
	군지역	229 (25.2) (9.0)	557 (61.2) (22.0)	96 (10.5) (3.8)	28 (3.1) (1.1)	910 (100.0) (35.9)	
총계		692 (27.3)	1472 (58.1)	271 (10.7)	98 (3.9)	2533 (100.0)	-

* p<.05, ** p<.01, *** p<.001

3.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들이 인권을 보호받는 인식 정도(초중고학생, 교원)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원들이 인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Ⅱ-7>와 같음

▣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인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대해 학생과 교원은 "그렇다."(47.0%), "매우 그렇다"(26.1%), "그렇지 않다"(18.9%), "전혀 그렇지 않다"(8.0%) 순으로 나타남.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들은 73.1%가 인권을 보호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대상별, 교원의 근무급별, 재직연수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 초등학교 "매우 그렇다"(35.7%), "그렇다."(45.4%), 중학교 "매우 그렇다"(18.5%), "그렇다."(46.7%), 고등학교 "매우 그렇다"(11.0%), "그렇다"(51.0%)로 나타남(X^2=327.704, p<.001).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쳐보면 초등 81.1%, 중등 65.2%, 고등 62.0%로 초등학교에서 높게 인권을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 : 초등학생 "매우 그렇다"(45.7%), "그렇다."(49.8%), 중학생 "매우 그렇다"(27.0%), "그렇다"(56.0%), 고등학생 "매우 그렇다"(12.0%), "그렇다"(63.7%), 교원 "매우그렇다"(15.3%), "그렇다."(36.5%)로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인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높게 인식하는 집단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인 것으로 나타남(X^2=1024.174, p<.001).

– 교원의 근무급별 : 교원 집단의 인권보호 정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36.5%), "그렇지 않다"(33.2%), "매우 그렇다"(15.3%), "전혀 그렇지 않다"(15.0%) 순으로 인권보호 정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48.2%로 높게 나타났음. 교원의 근무급별로 살펴보면 초등교사 "매우 그렇다"(20.2%), "그렇다.."(38.6%), 중등교사 "매우그렇다"(10.9%), "그렇다"(37.3%) 고등교사 "매우 그렇다"(8.9%), "그렇다"(30.8%)로 교원들의 인권보호 인식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X^2=62.701, p<.001).

<표Ⅱ-7>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인권을 보호 받는 인식 정도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학교급별	초등학교	844 (35.7) (19.5)	1074 (45.4) (24.8)	322 (13.6) (7.4)	124 (5.2) (2.9)	2364 (100.0) (54.6)	X^2=327.704*** df=6 p=.000
	중학교(공사립)	172 (18.5) (4.0)	434 (46.7) (10.0)	227 (24.4) (5.2)	96 (10.3) (2.2)	929 (100.0) (21.5)	
	고등학교(공사립)	114 (11.0) (2.6)	529 (51.0) (12.2)	269 (25.9) (6.2)	126 (12.1) (2.9)	1038 (100.0) (24.0)	
대상별	초등학생(4-6학년)	656 (45.7) (15.1)	715 (49.8) (16.5)	51 (3.6) (1.2)	13 (0.9) (0.3)	1435 (100.0) (33.1)	X^2=1024.174*** df=9 p=.000

	중학생 (1-3학년)	121 (27.0) (2.8)	251 (56.0) (5.8)	54 (12.1) (1.2)	22 (4.9) (0.5)	448 (100.0) (10.3)	
	고등학생 (1-3학년)	78 (12.0) (1.8)	414 (63.7) (9.6)	116 (17.8) (2.7)	42 (6.5) (1.0)	650 (100.0) (15.0)	
	교원 (초중고)	275 (15.3) (6.3)	657 (36.5) (15.2)	597 (33.2) (13.8)	269 (15.0) (6.2)	1798 (100.0) (41.5)	
소재지별	시지역	740 (26.5) (17.1)	1278 (45.7) (29.5)	555 (19.8) (12.8)	223 (8.0) (5.1)	2796 (100.0) (64.6)	X^2=7.243 df=3 p=.065
	군지역	390 (25.4) (9.0)	759 (49.4) (17.5)	263 (17.1) (6.1)	123 (8.0) (2.8)	1535 (100.0) (35.4)	
총계		1130 (26.1)	2037 (47.0)	818 (18.9)	346 (8.0)	4331 (100.0)	-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근무급별	초등교사	188 (20.2) (10.5)	359 (38.6) (20.0)	271 (29.2) (15.1)	111 (11.9) (6.2)	929 (100.0) (51.7)	X^2=62.701*** df=6 p=.000
	중등교사 (공사립)	51 (10.9) (2.8)	174 (37.3) (9.7)	169 (36.3) (9.4)	72 (15.5) (4.0)	466 (100.0) (25.9)	
	고등교사 (공사립)	36 (8.9) (2.0)	124 (30.8) (6.9)	157 (39.0) (8.7)	86 (21.3) (4.8)	403 (100.0) (22.4)	
재직연수	4년이하	41 (12.0) (2.3)	117 (34.3) (6.5)	123 (36.1) (6.8)	60 (17.6) (3.3)	341 (100.0) (19.0)	X^2=15.859 df=9 p=.070
	5년이상- 9년이하	45 (13.7) (2.5)	118 (35.9) (6.6)	114 (34.7) (6.3)	52 (15.8) (2.9)	329 (100.0) (18.3)	
	10년이상- 19년이하	70 (14.6) (3.9)	196 (40.8) (10.9)	144 (30.0) (8.0)	70 (14.6) (3.9)	480 (100.0) (26.7)	
	20년 이상	119 (18.4) (6.6)	226 (34.9) (12.6)	216 (33.3) (12.0)	87 (13.4) (4.8)	648 (100.0) (36.0)	
총계		275 (15.3)	657 (36.5)	597 (33.2)	269 (15.0)	1798 (100.0)	-

* $p<.05$, ** $p<.01$, *** $p<.001$

4. 학생의 잘못에 대한 교사의 체벌 가능 정도(초중고학생, 교원)

교사는 학생이 잘못하면 체벌을 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Ⅱ-8>와 같음

▣ 전체적으로 학생의 잘못에 대한 교사의 체벌 가능 정도에 대해 학생과 교원은 “그렇다.”(34.4%), “그렇지 않다”(33.1%), “전혀 그렇지 않다”(23.4%), “매우 그렇다”(9.1%) 순으로 나타남. 학생의 잘못에 대한 교사의 체벌 가능 정도에 대해 43.5%가 체벌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대상별, 교원의 근무급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 초등학교는 “매우 그렇다.”(8.8%), “그렇다.”(29.8%), 중학교 “매우 그렇다”(8.4%), “그렇다.”(39.2%), 고등학교 “매우 그렇다”(10.5%), “그렇다”(40.8%) 로 나타남(X^2=83.7390, p<.001). 고등학교(51.3%), 중학교(47.6%), 초등학교(38.6%) 순으로 교사의 체벌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 : 초등학생 “매우그렇다”(11.3%), “그렇다.”(32.5%), 중학생 “매우 그렇다”(11.2%), “그렇다”(40.8%), 고등학생 “매우 그렇다”(10.2%), “그렇다”(42.9%), 교원 ”매우그렇다.“(6.5%), ”그렇다“(31.3%)로 초(43.8%), 중(52.0%), 고(53.1%)의 체벌 가능 정도 보다 교원들(37.8%)이 체벌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X^2=143.000, p<.001).
- 교원의 근무급별 : 교원의 학생의 잘못에 대한 교사의 체벌 가능 정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그렇다”(6.5%), “그렇다”(31.3%), “그렇지 않다”(41.3%), “전혀 그렇지 않다”(21.0%)로 37.8%가 체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급별로 보면 초등교사 “매우 그렇다.”(4.8%), “그렇다”(25.5%), 중등교사 “매우 그렇다”(6.0%), “그렇다”(37.3%), 고등교사 “매우 그렇다”(10.7%), “그렇다”(37.5%)로 고(48.2%), 중(43.3%), 초(30.3%)순으로 학생의 잘못에 대한 교사의 체벌 가능 정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X^2=64.106, p<.001).

<표Ⅱ-8> 학생의 잘못에 대한 교사의 체벌 가능 정도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학교급별	초등학교	207 (8.8) (4.8)	704 (29.8) (16.3)	795 (33.6) (18.4)	658 (27.8) (15.2)	2364 (100.0) (54.6)	χ^2=83.7390*** df=6 p=.000
	중학교 (공사립)	78 (8.4) (1.8)	364 (39.2) (8.4)	300 (32.3) (6.9)	187 (20.1) (4.3)	929 (100.0) (21.5)	
	고등학교 (공사립)	109 (10.5) (2.5)	423 (40.8) (9.8)	338 (32.6) (7.8)	168 (16.2) (3.9)	1038 (100.0) (24.0)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162 (11.3) (3.7)	467 (32.5) (10.8)	392 (27.3) (9.1)	414 (28.9) (9.6)	1435 (100.0) (33.1)	χ^2=143.000*** df=9 p=.000
	중학생 (1-3학년)	50 (11.2) (1.2)	183 (40.8) (4.2)	114 (25.4) (2.6)	101 (22.5) (2.3)	448 (100.0) (10.3)	
	고등학생 (1-3학년)	66 (10.2) (1.5)	279 (42.9) (6.4)	184 (28.3) (4.2)	121 (18.6) (2.8)	650 (100.0) (15.0)	
	교원 (초중고)	116 (6.5) (2.7)	562 (31.3) (13.0)	743 (41.3) (17.2)	377 (21.0) (8.7)	1798 (100.0) (41.5)	
소재지별	시지역	246 (8.8) (5.7)	931 (33.3) (21.5)	951 (34.0) (22.0)	668 (23.9) (15.4)	2796 (100.0) (64.6)	χ^2=6.587 df=3 p=.086
	군지역	148 (9.6) (3.4)	560 (36.5) (12.9)	482 (31.4) (11.1)	345 (22.5) (8.0)	1535 (100.0) (35.4)	
총계		394 (9.1)	1491 (34.4)	1433 (33.1)	1013 (23.4)	4331 (100.0)	-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근무급별	초등교사	45 (4.8) (2.5)	237 (25.5) (13.2)	403 (43.4) (22.4)	244 (26.3) (13.6)	929 (100.0) (51.7)	χ^2=64.106*** df=6 p=.000
	중등교사 (공사립)	28 (6.0) (1.6)	174 (37.3) (9.7)	186 (39.9) (10.3)	78 (16.7) (4.3)	466 (100.0) (25.9)	
	고등교사 (공사립)	43 (10.7) (2.4)	151 (37.5) (8.4)	154 (38.2) (8.6)	55 (13.6) (3.1)	403 (100.0) (22.4)	
재직연수	4년이하	30 (8.8) (1.7)	106 (31.1) (5.9)	140 (41.1) (7.8)	65 (19.1) (3.6)	341 (100.0) (19.0)	χ^2=12.219 df=9 p=.201
	5년이상- 9년이하	19 (5.8) (1.1)	105 (31.9) (5.8)	139 (42.2) (7.7)	66 (20.1) (3.7)	329 (100.0) (18.3)	
	10년이상- 19년이하	28 (5.8) (1.6)	136 (28.3) (7.6)	194 (40.4) (10.8)	122 (25.4) (6.8)	480 (100.0) (26.7)	
	20년 이상	39 (6.0) (2.2)	215 (33.2) (12.0)	270 (41.7) (15.0)	124 (19.1) (6.9)	648 (100.0) (36.0)	
총계		116 (6.5)	562 (31.3)	743 (41.3)	377 (21.0)	1798 (100.0)	-

* p<.05, ** p<.01, *** p<.001

5. 중고학생과 교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 정도(중고학생, 교원)

중고학생과 교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의 높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Ⅱ-9>와 같음

▣ 전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의 높은 정도에 대해 중고등학생과 교원은 “그렇다.”(66.6%), “매우 그렇다”(22.0%), “그렇지 않다”(10.0%), “전혀 그렇지 않다”(1.4%) 순으로 나타남. 중고등학생과 교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88.6%로 높게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대상별, 교원의 근무급별, 재직연수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 : 중고등학생 및 교원의 인권 감수성의 높은 정도에 대해 중학생 “매우 그렇다”(19.9%), “그렇다”(66.3%), 고등학생 “매우 그렇다”(16.8%), “그렇다”(64.6%), 교원 ”매우 그렇다.“(24.4%), ”그렇다“(67.4%)로 대체로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X^2=86.305, p<.001). 중고등학생보다는 교원들이 인권감수성이 더 높게 나타남.
- 교원 전체의 인권 감수성에 대한 높이 정도는 “그렇다”(67.4%), “매우 그렇다”(24.4%), “그렇지 않다”(7.7%), “전혀 그렇지 않다”(0.5%) 순으로 나타남. 교원 91.8%가 인권 감수성이 높게 나타남.
- 교원의 근무급별 : 교원의 근무급별 인권감수성의 높은 정도는 초등교사 “매우 그렇다.”(28.3%), “그렇다.”(63.9%), 중등교사 “매우 그렇다”(19.3%), “그렇다”(73.0%), 고등교사 “매우 그렇다”(21.3%), “그렇다”(68.7%)로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남(X^2=19.758, p<.01).

<표Ⅱ-9> 중고학생과 교사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유의도 검정
대상별	중학생 (1-3학년)	89 (19.9) (3.1)	297 (66.3) (10.3)	44 (9.8) (1.5)	18 (4.0) (0.6)	448 (100.0) (15.5)	X^2=86.305*** df=6 p=.000
	고등학생 (1-3학년)	109 (16.8) (3.8)	420 (64.6) (14.5)	108 (16.6) (3.7)	13 (2.0) (0.4)	650 (100.0) (22.4)	
	교원 (초중고)	439 (24.4) (15.2)	1211 (67.4) (41.8)	139 (7.7) (4.8)	9 (0.5) (0.3)	1798 (100.0) (62.1)	
소재지별	시지역	404 (22.7) (14.0)	1182 (66.3) (40.8)	174 (9.8) (6.0)	23 (1.3) (0.8)	1783 (100.0) (61.6)	X^2=1.648 df=3 p=.649
	군지역	233 (20.9) (8.0)	746 (67.0) (25.8)	117 (10.5) (4.0)	17 (1.5) (0.6)	1113 (100.0) (38.4)	
총계		637 (22.0)	1928 (66.6)	291 (10.0)	40 (1.4)	2896 (100.0)	-

구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유의도 검정
근무급별	초등교사	263 (28.3) (14.6)	594 (63.9) (33.0)	69 (7.4) (3.8)	3 (0.3) (0.2)	929 (100.0) (51.7)	X^2=19.758** df=6 p=.003
	중등교사 (공사립)	90 (19.3) (5.0)	340 (73.0) (18.9)	34 (7.3) (1.9)	2 (0.4) (0.1)	466 (100.0) (25.9)	
	고등교사 (공사립)	86 (21.3) (4.8)	277 (68.7) (15.4)	36 (8.9) (2.0)	4 (1.0) (0.2)	403 (100.0) (22.4)	
재직연수	4년이하	86 (25.2) (4.8)	225 (66.0) (12.5)	26 (7.6) (1.4)	4 (1.2) (0.2)	341 (100.0) (19.0)	X^2=16.341 df=9 p=.060
	5년이상-9년이하	78 (23.7) (4.3)	213 (64.7) (11.8)	35 (10.6) (1.9)	3 (0.9) (0.2)	329 (100.0) (18.3)	
	10년이상-19년이하	111 (23.1) (6.2)	326 (67.9) (18.1)	41 (8.5) (2.3)	2 (0.4) (0.1)	480 (100.0) (26.7)	
	20년 이상	164 (25.3) (9.1)	447 (69.0) (24.9)	37 (5.7) (2.1)	0 (0.0) (0.0)	648 (100.0) (36.0)	
총계		439 (24.4)	1211 (67.4)	139 (7.7)	9 (0.5)	1798 (100.0)	-

* $p<.05$, ** $p<.01$, *** $p<.001$

6.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 정도(초중고학생, 교원)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을 규제해야 하는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Ⅱ-10>와 같음

▣ 전체적으로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을 규제해야 하는 정도에 대해 초중고등학생과 교원은 “그렇지 않다”(37.7%), “그렇다”(30.0%), “전혀 그렇지 않다”(25.0%), “매우 그렇다”(7.3%) 순으로 나타남. 학생 62.7%가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를 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대상별, 교원의 근무급별, 재직연수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 초등학교는 “매우 그렇다.”(6.1%), “그렇다”(22.7%), 중학교 “매우 그렇다”(9.0%), “그렇다.”(40.7%), 고등학교 “매우 그렇다.”(8.6%), “그렇다”(36.9%)로 나타남(X^2=180.458, p<.001). 고중초등학교 순으로 두발 및 용의복장을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 : 초등학생 “매우 그렇다”(8.0%), “그렇다”(23.1%) 중학생 “매우 그렇다”(9.6%), “그렇다”(35.3%), 고등학생 “매우 그렇다”(6.3%), “그렇다”(32.3%), 교원 ”매우 그렇다“(6.6%), ”그렇다“(33.3%)로 두발 및 용의복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남(X^2=180.113, p<.001).
- 교원 전체의 학생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 정도는 “그렇지 않다”(43.2%), “그렇다”(33.3%), “전혀 그렇지 않다”(17.0%), “매우 그렇다”(6.6%) 순으로 나타남. 교원 60.2%가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을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교원의 근무급별 : 교원의 근무급별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 정도는 초등교사 “매우 그렇다”(3.1%), “그렇다”(22.1%), 중등교사 “매우 그렇다.”(9.0%), “그렇다”(45.7%), 고등교사 “매우 그렇다”(11.7%), “그렇다”(44.7%)로 초등교사는 25.1%, 중등교사 54.7%, 고등교사 56.4%가 학생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를 찬성 하는 것으로 나타남(X^2=182.169, p<.001).

<표Ⅱ-10>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 정도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유의도 검정
학교급별	초등학교	144 (6.1) (3.3)	537 (22.7) (12.4)	963 (40.7) (22.2)	720 (30.5) (16.6)	2364 (100.0) (54.6)	χ^2=180.458*** df=6 p=.000
	중학교 (공사립)	84 (9.0) (1.9)	378 (40.7) (8.7)	299 (32.2) (6.9)	168 (18.1) (3.9)	929 (100.0) (21.5)	
	고등학교 (공사립)	89 (8.6) (2.1)	383 (36.9) (8.8)	370 (35.6) (8.5)	196 (18.9) (4.5)	1038 (100.0) (24.0)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115 (8.0) (2.7)	332 (23.1) (7.7)	478 (33.3) (11.0)	510 (35.5) (11.8)	1435 (100.0) (33.1)	χ^2=180.113*** df=9 p=.000
	중학생 (1-3학년)	43 (9.6) (1.0)	158 (35.3) (3.6)	134 (29.9) (3.1)	113 (25.2) (2.6)	448 (100.0) (10.3)	
	고등학생 (1-3학년)	41 (6.3) (0.9)	210 (32.3) (4.8)	243 (37.4) (5.6)	156 (24.0) (3.6)	650 (100.0) (15.0)	
	교원 (초중고)	118 (6.6) (2.7)	598 (33.3) (13.8)	777 (43.2) (17.9)	305 (17.0) (7.0)	1798 (100.0) (41.5)	
소재지별	시지역	198 (7.1) (4.6)	848 (30.3) (19.6)	1043 (37.3) (24.1)	707 (25.3) (16.3)	2796 (100.0) (64.6)	χ^2=1.457 df=3 p=.692
	군지역	119 (7.8) (2.7)	450 (29.3) (10.4)	589 (38.4) (13.6)	377 (24.6) (8.7)	1535 (100.0) (35.4)	
총계		317 (7.3)	1298 (30.0)	1632 (37.7)	1084 (25.0)	4331 (100.0)	-

구분		응답내용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유의도 검정
근무급별	초등교사	29 (3.1) (1.6)	205 (22.1) (11.4)	485 (52.2) (27.0)	210 (22.6) (11.7)	929 (100.0) (51.7)	χ^2=182.169*** df=6 p=.000
	중학교사 (공사립)	42 (9.0) (2.3)	213 (45.7) (11.8)	163 (35.0) (9.1)	48 (10.3) (2.7)	466 (100.0) (25.9)	
	고등교사 (공사립)	47 (11.7) (2.6)	180 (44.7) (10.0)	129 (32.0) (7.2)	47 (11.7) (2.6)	403 (100.0) (22.4)	
재직연수	4년이하	14 (4.1) (0.8)	110 (32.3) (6.1)	147 (43.1) (8.2)	70 (20.5) (3.9)	341 (100.0) (19.0)	χ^2=36.538*** df=9 p=.000
	5년이상- 9년이하	18 (5.5) (1.0)	87 (26.4) (4.8)	164 (49.8) (9.1)	60 (18.2) (3.3)	329 (100.0) (18.3)	
	10년이상- 19년이하	32 (6.7) (1.8)	143 (29.8) (8.0)	223 (46.5) (12.4)	82 (17.1) (4.6)	480 (100.0) (26.7)	
	20년 이상	54 (8.3) (3.0)	258 (39.8) (14.3)	243 (37.5) (13.5)	93 (14.4) (5.2)	648 (100.0) (36.0)	
총계		118 (6.6)	598 (33.3)	777 (43.2)	305 (17.0)	1798 (100.0)	-

* $p<.05$, ** $p<.01$, *** $p<.001$

7. 수업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는 정도(초중고학생, 교원)

수업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어야 하는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Ⅱ-11>와 같음

▣ 전체적으로 수업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어야하는 정도에 대해 초중고등학생과 교원은 “그렇다”(33.2%), “그렇지 않다”(29.3%), “매우 그렇다”(20.6%), “전혀 그렇지 않다”(16.9%) 순으로 나타남. 53.8%가 수업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어야하는 한다고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대상별, 교원의 근무급별, 재직연수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다.”(35.3%), 중학교 “그렇다.”(42.8%), 고등학교 “그렇다”(37.0%)로 높게 나타남(X^2=163.457, p<.001). 중학교 68.6%, 고등학교 58.8%, 초등학교 45.7% 순으로 휴대전화를 걷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 : 초등학생 43.0%, 중학생 47.7%, 고등학생 46.2%, 교원 66.5%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보다도 교원들이 휴대전화를 걷어야 한다고 더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X^2=337.639, p<.001).
- 교원 전체의 수업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어야 한다는 응답에 “그렇다”(39.4%), “그렇지 않다”(26.8%), “매우 그렇다”(27.1%), “전혀 그렇지 않다”(6.6%) 순으로 나타남. 교원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교원의 근무급별 : 교원의 근무급별 수업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어야 한다는 응답에 중등교사 89.1%, 고등교사 79.2%, 초등교사 49.8%로 중고초순으로 나타남(X^2=267.009, p<.001).
- 재직연수별 : 교원의 재직연수별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어야 한다는 응답에 4년이하 64.8%, 5년이상-9년이하 63.5%, 10년이상-19년이하 56.7%, 20년 이상 76.4% 로 나타남(X^2=56.605, p<.001). 2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이 휴대폰을 걷어야 한다는 응답에 가장 높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남.

<표Ⅱ-11> 수업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는 정도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유의도 검정
학교급별	초등학교	425 (18.0) (9.8)	655 (27.7) (15.1)	835 (35.3) (19.3)	449 (19.0) (10.4)	2364 (100.0) (54.6)	χ^2=163.457*** df=6 p=.000
	중학교 (공사립)	240 (25.8) (5.5)	398 (42.8) (9.2)	162 (17.4) (3.7)	129 (13.9) (3.0)	929 (100.0) (21.5)	
	고등학교 (공사립)	226 (21.8) (5.2)	384 (37.0) (8.9)	274 (26.4) (6.3)	154 (14.8) (3.6)	1038 (100.0) (24.0)	
대상별	초등학생(4-6학년)	268 (18.7) (6.2)	349 (24.3) (8.1)	466 (32.5) (10.8)	352 (24.5) (8.1)	1435 (100.0) (33.1)	χ^2=337.639*** df=9 p=.000
	중학생 (1-3학년)	57 (12.7) (1.3)	157 (35.0) (3.6)	119 (26.6) (2.7)	115 (25.7) (2.7)	448 (100.0) (10.3)	
	고등학생 (1-3학년)	78 (12.0) (1.8)	222 (34.2) (5.1)	204 (31.4) (4.7)	146 (22.5) (3.4)	650 (100.0) (15.0)	
	교원 (초중고)	488 (27.1) (11.3)	709 (39.4) (16.4)	482 (26.8) (11.1)	119 (6.6) (2.7)	1798 (100.0) (41.5)	
소재지별	시지역	578 (20.7) (13.3)	894 (32.0) (20.6)	853 (30.5) (19.7)	471 (16.8) (10.9)	2796 (100.0) (64.6)	χ^2=7.131 df=3 p=.068
	군지역	313 (20.4) (7.2)	543 (35.4) (12.5)	418 (27.2) (9.7)	261 (17.0) (6.0)	1535 (100.0) (35.4)	
총계		891 (20.6)	1437 (33.2)	1271 (29.3)	732 (16.9)	4331 (100.0)	-

구분		응답내용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유의도 검정
근무급별	초등교사	157 (16.9) (8.7)	306 (32.9) (17.0)	369 (39.7) (20.5)	97 (10.4) (5.4)	929 (100.0) (51.7)	χ^2=267.009*** df=6 p=.000
	중등교사 (공사립)	184 (39.5) (10.2)	231 (49.6) (12.8)	41 (8.8) (2.3)	10 (2.1) (0.6)	466 (100.0) (25.9)	
	고등교사 (공사립)	147 (36.5) (8.2)	172 (42.7) (9.6)	72 (17.9) (4.0)	12 (3.0) (0.7)	403 (100.0) (22.4)	
재직연수	4년이하	84 (24.6) (4.7)	137 (40.2) (7.6)	97 (28.4) (5.4)	23 (6.7) (1.3)	341 (100.0) (19.0)	χ^2=56.605*** df=9 p=.000
	5년이상 -9년이하	76 (23.1) (4.2)	133 (40.4) (7.4)	96 (29.2) (5.3)	24 (7.3) (1.3)	329 (100.0) (18.3)	
	10년이상 -19년이하	122 (25.4) (6.8)	150 (31.3) (8.3)	162 (33.8) (9.0)	46 (9.6) (2.6)	480 (100.0) (26.7)	
	20년 이상	206 (31.8) (11.5)	289 (44.6) (16.1)	127 (19.6) (7.1)	26 (4.0) (1.4)	648 (100.0) (36.0)	
총계		488 (27.1)	709 (39.4)	482 (26.8)	119 (6.6)	1798 (100.0)	-

* $p<.05$, ** $p<.01$, *** $p<.001$

8. 학생의 의사결정시 교사나 부모님의 의견 반영 정도(초중고학생, 교원)

학생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12>와 같음

▣ 전체적으로 학생의 의사결정시 교사나 부모님의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해 초, 중, 고등학생과 교원은 "그렇지 않다"(44.7%), "그렇다"(33.9%), "전혀 그렇지 않다"(12.5%), "매우 그렇다"(8.8%) 순으로 나타남. 학생의 의사결정시 57.2%가 교사나 부모님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높게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대상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 초등학교는 52.1%, 중학교 60.1%, 고등학교 66.4%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학생의 의사결정시 본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X^2=116.739, p<.001). 초, 중, 고등학교 모든 학생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높게 나타남.
- 대상별 : 초등학생 44.4%, 중학생 60.7%, 고등학생 72.3%, 교원 61.2%로 초등학생은 교사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데 높게 반응한 반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데 높게 나타남(X^2=452.971, p<.001).

<표Ⅱ-12> 학생의 의사결정시 교사나 부모님의 의견 반영 정도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학교급별	초등학교	281 (11.9) (6.5)	851 (36.0) (19.6)	1002 (42.4) (23.1)	230 (9.7) (5.3)	2364 (100.0) (54.6)	X^2=116.739*** df=6 p=.000
	중학교 (공사립)	53 (5.7) (1.2)	317 (34.1) (7.3)	437 (47.0) (10.1)	122 (13.1) (2.8)	929 (100.0) (21.5)	
	고등학교 (공사립)	47 (4.5) (1.1)	302 (29.1) (7.0)	499 (48.1) (11.5)	190 (18.3) (4.4)	1038 (100.0) (24.0)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240 (16.7) (5.5)	558 (38.9) (12.9)	472 (32.9) (10.9)	165 (11.5) (3.8)	1435 (100.0) (33.1)	X^2=452.971*** df=9 p=.000
	중학생 (1-3학년)	32 (7.1) (0.7)	144 (32.1) (3.3)	177 (39.5) (4.1)	95 (21.2) (2.2)	448 (100.0) (10.3)	
	고등학생 (1-3학년)	27 (4.2) (0.6)	153 (23.5) (3.5)	302 (46.5) (7.0)	168 (25.8) (3.9)	650 (100.0) (15.0)	
	교원 (초중고)	82 (4.6) (1.9)	615 (34.2) (14.2)	987 (54.9) (22.8)	114 (6.3) (2.6)	1798 (100.0) (41.5)	
소재지별	시지역	245 (8.8) (5.7)	957 (34.2) (22.1)	1242 (44.4) (28.7)	352 (12.6) (8.1)	2796 (100.0) (64.6)	X^2=0.424 df=3 p=.935
	군지역	136 (8.9) (3.1)	513 (33.4) (11.8)	696 (45.3) (16.1)	190 (12.4) (4.4)	1535 (100.0) (35.4)	
총계		381 (8.8)	1470 (33.9)	1938 (44.7)	542 (12.5)	4331 (100.0)	-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근무급별	초등교사	41 (4.4) (2.3)	293 (31.5) (16.3)	530 (57.1) (29.5)	65 (7.0) (3.6)	929 (100.0) (51.7)	X^2=8.6135 df=6 p=.197
	중등교사 (공사립)	21 (4.5) (1.2)	169 (36.3) (9.4)	253 (54.3) (14.1)	23 (4.9) (1.3)	466 (100.0) (25.9)	
	고등교사(공사립)	20 (5.0) (1.1)	153 (38.0) (8.5)	204 (50.6) (11.3)	26 (6.5) (1.4)	403 (100.0) (22.4)	
재직연수	4년이하	11 (3.2) (0.6)	102 (29.9) (5.7)	198 (58.1) (11.0)	30 (8.8) (1.7)	341 (100.0) (19.0)	X^2=16.785 df=9 p=.052
	5년이상 -9년이하	12 (3.6) (0.7)	103 (31.3) (5.7)	193 (58.7) (10.7)	21 (6.4) (1.2)	329 (100.0) (18.3)	
	10년이상 -19년이하	26 (5.4) (1.4)	161 (33.5) (9.0)	264 (55.0) (14.7)	29 (6.0) (1.6)	480 (100.0) (26.7)	
	20년 이상	33 (5.1) (1.8)	249 (38.4) (13.8)	332 (51.2) (18.5)	34 (5.2) (1.9)	648 (100.0) (36.0)	
총계		82 (4.6)	615 (34.2)	987 (54.9)	114 (6.3)	1798 (100.0)	-

* $p<.05$, ** $p<.01$, *** $p<.001$

9. 성적 반영한 학교생활에 대한 보상 정도(초중고학생)

초등학생은 공부를 잘하면 급식을 먼저 받아야 한다. 중고등학생은 성적이 우수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13>와 같음.

▣ 전체적으로 성적 반영한 학교생활에 대한 보상 정도에 대해 초중고등학생은 “전혀 그렇지 않다”(52.8%), “그렇지 않다”(22.1%), “그렇다”(18.4%), “매우 그렇다”(6.7%) 순으로 나타남. 74.9%가 성적을 반영한 학교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대상별, 학년별, 소재지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 : 초등학생 94.8%가 성적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생 51.8%, 고등학생 50.7%는 성적을 반영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함(X^2=979.612, p<.001).
- 학년별 : 초등4학년 95.1%, “초등5학년 93.6%, 초등6학년 96.0%, 중1학년 49.7%, 중2학년 47.8%, 중3학년 47.4%, 고1학년 50.2%, 고2학년 49.5%, 고3학년 37.9%로 성적을 반영한 학교생활 보상을 받지 않아야한다고 응답함.
- 소재지별 : 시지역 78.4%, 군지역 68.5%로 성적을 반영한 학교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Ⅱ-13> 성적 반영한 학교생활에 대한 보상 정도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32 (2.2) (1.3)	43 (3.0) (1.7)	238 (16.6) (9.4)	1122 (78.2) (44.3)	1435 (100.0) (56.7)	X^2=979.612*** df=6 p=.000
	중학생 (1-3학년)	61 (13.6) (2.4)	171 (38.2) (6.8)	123 (27.4) (4.9)	93 (20.8) (3.7)	448 (100.0) (17.7)	

	고등학생 (1-3학년)	77 (11.8) (3.0)	253 (38.9) (10.0)	198 (30.5) (7.8)	122 (18.8) (4.8)	650 (100.0) (25.7)	
학년별	초등학생 (4학년)	9 (1.8) (0.4)	16 (3.2) (0.6)	70 (13.8) (2.8)	412 (81.3) (16.3)	507 (100.0) (20.0)	X^2=1024.067*** df=24 p=.000
	초등학생 (5학년)	14 (2.6) (0.6)	20 (3.7) (0.8)	102 (19.1) (4.0)	398 (74.5) (15.7)	534 (100.0) (21.1)	
	초등학생 (6학년)	9 (2.3) (0.4)	7 (1.8) (0.3)	66 (16.8) (2.6)	312 (79.2) (12.3)	394 (100.0) (15.6)	
	중학생 (1학년)	14 (10.9) (0.6)	51 (39.5) (2.0)	42 (32.6) (1.7)	22 (17.1) (0.9)	129 (100.0) (5.1)	
	중학생 (2학년)	23 (11.4) (0.9)	82 (40.8) (3.2)	47 (23.4) (1.9)	49 (24.4) (1.9)	201 (100.0) (7.9)	
	중학생 (3학년)	24 (20.3) (0.9)	38 (32.2) (1.5)	34 (28.8) (1.3)	22 (18.6) (0.9)	118 (100.0) (4.7)	
	고등학생 (1학년)	24 (9.5) (0.9)	102 (40.3) (4.0)	78 (30.8) (3.1)	49 (19.4) (1.9)	253 (100.0) (10.0)	
	고등학생 (2학년)	44 (12.0) (1.7)	142 (38.6) (5.6)	113 (30.7) (4.5)	69 (18.8) (2.7)	368 (100.0) (14.5)	
	고등학생 (3학년)	9 (31.0) (0.4)	9 (31.0) (0.4)	7 (24.1) (0.3)	4 (13.8) (0.2)	29 (100.0) (1.1)	
소재지별	시지역	94 (5.8) (3.7)	256 (15.8) (10.1)	327 (20.1) (12.9)	946 (58.3) (37.3)	1623 (100.0) (64.1)	X^2=56.555*** df=3 p=.000
	군지역	76 (8.4) (3.0)	211 (23.2) (8.3)	232 (25.5) (9.2)	391 (43.0) (15.4)	910 (100.0) (35.9)	
총계		170 (6.7)	467 (18.4)	559 (22.1)	1337 (52.8)	2533 (100.0)	-

* p<.05, ** p<.01, *** p<.001\

10. 학생의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한 자신 의견 제시 정도(중고학생, 교원)

학생은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14>와 같음

▣ 전체적으로 학생의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 정도에 대해 중고등학생과 교원은 “그렇다”(62.5%), “매우 그렇다”(29.1%), “그렇지 않다”(6.8%), “전혀 그렇지 않다”(1.5%%) 순으로 나타남. 학생은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를 91.6%가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대상별, 교원의 근무급별, 재직연수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 : 학생의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 정도에 대해 중학생 89.5%, 고등학생 91.8%, 교원 92.2%로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X^2=64.806, p<.001).
- 교원 전체의 학생의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 여부는 “그렇다”(67.7%), “매우 그렇다”(24.5%), “그렇지 않다”(6.7%), “전혀 그렇지 않다”(1.1%) 순으로 나타남. **교원 92.2%가 학생의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응답함.**
- 교원의 근무급별 : 교원의 근무급별 학생의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 여부는 초등교사 93.5%, 중등교사 89.9%, 고등교사 91.8% 순으로 초중고교사 모두 학생의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높게 반응함(X^2=58.257, p<.001).
- 재직연수별 : 교원의 재직연수별 학생의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 여부는 4년이하 96.7%, 5년이상-9년이하 95.4%, 10년이상-19년이하 93.9%, 20년 이상 86.7%로 나타남(X^2=135.436, p<.001). 재직연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한 자신 의견 제시 여부에 대해 낮게 응답함.

<표Ⅱ-14> 학생의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한 자신 의견 제시 정도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유의도 검정
대상별	중학생 (1-3학년)	151 (33.7) (5.2)	250 (55.8) (8.6)	36 (8.0) (1.2)	11 (2.5) (0.4)	448 (100.0) (15.5)	X^2=64.806*** df=6 p=.000
	고등학생 (1-3학년)	253 (38.9) (8.7)	344 (52.9) (11.9)	41 (6.3) (1.4)	12 (1.8) (0.4)	650 (100.0) (22.4)	
	교원 (초중고)	440 (24.5) (15.2)	1217 (67.7) (42.0)	121 (6.7) (4.2)	20 (1.1) (0.7)	1798 (100.0) (62.1)	
소재지별	시지역	523 (29.3) (18.1)	1111 (62.3) (38.4)	124 (7.0) (4.3)	25 (1.4) (0.9)	1783 (100.0) (61.6)	X^2=0.4.1 df=3 p=.940
	군지역	321 (28.8) (11.1)	700 (62.9) (24.2)	74 (6.6) (2.6)	18 (1.6) (0.6)	1113 (100.0) (38.4)	
총계		844 (29.1)	1811 (62.5)	198 (6.8)	43 (1.5)	2896 (100.0)	-

구분		응답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유의도 검정
근무급별	초등교사	269 (29.0) (15.0)	599 (64.5) (33.3)	49 (5.3) (2.7)	12 (1.3) (0.7)	929 (100.0) (51.7)	X^2=58.257*** df=6 p=.000
	중등교사 (공사립)	83 (17.8) (4.6)	336 (72.1) (18.7)	43 (9.2) (2.4)	4 (0.9) (0.2)	466 (100.0) (25.9)	
	고등교사 (공사립)	88 (21.8) (4.9)	282 (70.0) (15.7)	29 (7.2) (1.6)	4 (1.0) (0.2)	403 (100.0) (22.4)	
재직연수	4년이하	129 (37.8) (7.2)	201 (58.9) (11.2)	8 (2.3) (0.4)	3 (0.9) (0.2)	341 (100.0) (19.0)	X^2=135.436*** df=9 p=.000
	5년이상-9년이하	109 (33.1) (6.1)	205 (62.3) (11.4)	12 (3.6) (0.7)	3 (0.9) (0.2)	329 (100.0) (18.3)	
	10년이상-19년이하	123 (25.6) (6.8)	328 (68.3) (18.2)	21 (4.4) (1.2)	8 (1.7) (0.4)	480 (100.0) (26.7)	
	20년 이상	79 (12.2) (4.4)	483 (74.5) (26.9)	80 (12.3) (4.4)	6 (0.9) (0.3)	648 (100.0) (36.0)	
총계		440 (24.5)	1217 (67.7)	121 (6.7)	20 (1.1)	1798 (100.0)	-

* p<.05, ** p<.01, *** p<.001

제 4 절 인권관련 학교생활에 대한 요구 분석

1. 학생지도방법으로 반성문이나 각서의 강요 여부(초중고학생, 교원)

우리 학교가 지도방법으로 반성문이나 각서를 강요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15>와 같음

▣ 전체적으로 학생지도방법으로 반성문이나 각서의 강요 여부에 대해 초중고 학생과 교원은 “아니다”(83.9%), “그렇다”(16.1%) 순으로 나타남. 초중고 학생 및 교원은 83.9%가 학생지도방법으로 반성문이나 각서의 강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대상별, 교원의 근무급별, 재직연수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 학생지도방법으로 반성문이나 각서의 강요 여부에 대해 초등학교 “아니다”(88.5%), 중학교 “아니다”(75.5%), 고등학교 “아니다”(80.4%)로 나타남(X^2=93.473, p<.001).
- 대상별 : 초등학생 “아니다”(84.9%), 중학생 “아니다”(67.4%), 고등학생 “아니다”(79.5%), 교원 ”아니다“(88.8%)로 교원,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반성문이나 각서를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X^2=132.624, p<.001).
- 교원 전체의 학생지도방법으로 반성문이나 각서의 강요 여부에 대해 “아니다”(88.8%), “그렇다”(11.2%) 순으로 나타남. 교원 88.8%가 학생지도방법으로 반성문이나 각서를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Ⅱ-15> 학생지도방법으로 반성문이나 각서의 강요 유무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학교 급별	초등학교	271 (11.5) (6.3)	2093 (88.5) (48.3)	2364 (100.0) (54.6)	X^2=93.473*** df=2 p=.000

	중학교 (공사립)	228 (24.5) (5.3)	701 (75.5) (16.2)	929 (100.0) (21.5)	
	고등학교 (공사립)	198 (19.1) (4.6)	840 (80.9) (19.4)	1038 (100.0) (24.0)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217 (15.1) (5.0)	1218 (84.9) (28.1)	1435 (100.0) (33.1)	X^2=132.624*** df=3 p=.000
	중학생 (1-3학년)	146 (32.6) (3.4)	302 (67.4) (7.0)	448 (100.0) (10.3)	
	고등학생 (1-3학년)	133 (20.5) (3.1)	517 (79.5) (11.9)	650 (100.0) (15.0)	
	교원 (초중고)	201 (11.2) (4.6)	1597 (88.8) (36.9)	1798 (100.0) (41.5)	
소재지별	시지역	457 (16.3) (10.6)	2339 (83.7) (54.0)	2796 (100.0) (64.6)	X^2=0.370 df=1 p=.543
	군지역	240 (15.6) (5.5)	1295 (84.4) (29.9)	1535 (100.0) (35.4)	
총계		697 (16.1)	3634 (83.9)	4331 (100.0)	-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근무급별	초등교사	54 (5.8) (3.0)	875 (94.2) (48.7)	929 (100.0) (51.7)	X^2=55.780*** df=2 p=.000
	중등교사 (공사립)	78 (16.7) (4.3)	388 (83.3) (21.6)	466 (100.0) (25.9)	
	고등교사 (공사립)	69 (17.1) (3.8)	334 (82.9) (18.6)	403 (100.0) (22.4)	
재직연수	4년이하	33 (9.7) (1.8)	308 (90.3) (17.1)	341 (100.0) (19.0)	X^2=11.405* df=3 p=.010
	5년이상-9년이하	31 (9.4) (1.7)	298 (90.6) (16.6)	329 (100.0) (18.3)	
	10년이상-19년이하	43 (9.0) (2.4)	437 (91.0) (24.3)	480 (100.0) (26.7)	
	20년 이상	94 (14.5) (5.2)	554 (85.5) (30.8)	648 (100.0) (36.0)	
총계		201 (11.2)	1597 (88.8)	1798 (100.0)	-

* $p<.05$, ** $p<.01$, *** $p<.001$

2. 흡연이나 도난사고로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 검사 여부(초중고학생, 교원)

우리 학교는 흡연이나 도난사고를 이유로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16>와 같음

▣ 전체적으로 흡연이나 도난사고를 이유로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는지에 대해 초중고학생과 교원은 “아니다”(94.5%), “그렇다”(5.5%) 순으로 나타남. 초중고학생 및 교원은 94.5%가 흡연이나 도난사고로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대상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 흡연이나 도난사고를 이유로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는지에 대해 초등학교 “아니다”(95.9%), 중학교 “아니다”(92.2%), 고등학교 “아니다(93.3%)로 나타남(X^2=21.577, p<.001).
- 대상별 : 초등학생 “아니다”(93.9%), 중학생 “아니다”(86.8%), 고등학생 “아니다”(90.0%), 교원 ”아니다“(98.5%)로 교원,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X^2=132.313, p<.001).

<표Ⅱ-16> 흡연이나 도난사고를 이유로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 검사 유무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학교 급별	초등학교	96 (4.1) (2.2)	2268 (95.9) (52.4)	2364 (100.0) (54.6)	X^2=21.577*** df=2 p=.000
	중학교 (공사립)	72 (7.8) (1.7)	857 (92.2) (19.8)	929 (100.0) (21.5)	
	고등학교 (공사립)	70 (6.7) (1.6)	968 (93.3) (22.4)	1038 (100.0) (24.0)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87 (6.1) (2.0)	1348 (93.9) (31.1)	1435 (100.0) (33.1)	X^2=132.313*** df=3 p=.000
	중학생	59	389	448	

	(1-3학년)	(13.2) (1.4)	(86.8) (9.0)	(100.0) (10.3)	
	고등학생 (1-3학년)	65 (10.0) (1.5)	585 (90.0) (13.5)	650 (100.0) (15.0)	
	교원 (초중고)	27 (1.5) (0.6)	1771 (98.5) (40.9)	1798 (100.0) (41.5)	
소재지별	시지역	148 (5.3) (10.6)	2648 (94.7) (54.0)	2796 (100.0) (64.6)	χ^2=0.620 df=1 p=.431
	군지역	90 (5.9) (2.1)	1445 (94.1) (33.4)	1535 (100.0) (35.4)	
총계		238 (5.5)	4093 (94.5)	4331 (100.0)	-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근무급별	초등교사	9 (1.0) (0.5)	920 (99.0) (51.2)	929 (100.0) (51.7)	χ^2=5.891 df=2 p=.053
	중등교사 (공사립)	7 (1.5) (0.4)	459 (98.5) (25.5)	466 (100.0) (25.9)	
	고등교사 (공사립)	11 (2.7) (0.6)	392 (97.3) (21.8)	403 (100.0) (22.4)	
재직연수	4년이하	6 (1.8) (0.3)	335 (98.2) (18.6)	341 (100.0) (19.0)	χ^2=0.645 df=3 p=.886
	5년이상-9년이하	6 (1.8) (0.3)	323 (98.2) (18.0)	329 (100.0) (18.3)	
	10년이상-19년이하	6 (1.3) (0.3)	474 (98.8) (26.4)	480 (100.0) (26.7)	
	20년 이상	9 (1.4) (0.5)	639 (98.6) (35.5)	648 (100.0) (36.0)	
총계		27 (1.5)	1771 (98.5)	1798 (100.0)	-

* p<.05, ** p<.01, *** p<.001

3.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조건의 유무(초중고학생, 교원)

우리 학교는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조건(성적, 출결, 징계 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17>와 같음

▣ 전체적으로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조건의 유무에 대해 초중고학생과 교원은 “아니다”(76.5%), “그렇다”(23.5%) 순으로 나타남. **초중고학생 및 교원 23.5%가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대상별, 교원의 근무급별, 재직연수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조건 여부에 대해 초등학교 “아니다”(87.2%), 중학교 “아니다”(64.2%), 고등학교 “아니다”(63.3%)로 나타남(X^2=33.092, p<.001).
- 대상별 : 초등학생 “아니다”(80.7%), 중학생 “아니다”(61.2%), 고등학생 “아니다”(60.6%), 교원 ”아니다“(82.8%)로 교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조건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X^2=204.044, p<.001).
- 교원 전체의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조건 여부에 대해 “아니다”(82.8%), “그렇다”(17.2%) 순으로 나타남. **교원 17.2%가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조건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교원의 근무급별 : 교원의 근무급별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조건의 유무에 대해 초등교사 “아니다”(97.3%), 중등교사 “아니다”(66.7%), 고등교사 “아니다”(68.0%) 로 초등교사 2.7%, 중등교사 33.3%, 고등교사 32.0%가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조건을 둔다고 반응함(X^2=283.984, p<.001).
- 재직연수별 : 교원의 재직연수별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조건 여부에 대해 4년이하 “아니다”(81.2%), 5년이상-9년이하 “아니다”(85.4%), 10년이상-19년이하 “아니다”(88.1%), 20년 이상 “아니다”(78.4%)로 나타남(X^2=20.562, p<.001).

<표Ⅱ-17>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조건의 유무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학교급별	초등학교	302 (12.8) (2.2)	2062 (87.2) (52.4)	2364 (100.0) (54.6)	X^2=33.092*** df=2 p=.000

	중학교 (공사립)	333 (35.8) (7.7)	596 (64.2) (13.8)	929 (100.0) (21.5)	
	고등학교 (공사립)	381 (36.7) (8.8)	657 (63.3) (15.2)	1038 (100.0) (24.0)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277 (19.3) (6.4)	1158 (80.7) (26.7)	1435 (100.0) (33.1)	X^2=204.044*** df=3 p=.000
	중학생 (1-3학년)	174 (38.8) (4.0)	274 (61.2) (6.3)	448 (100.0) (10.3)	
	고등학생 (1-3학년)	256 (39.4) (5.9)	394 (60.6) (9.1)	650 (100.0) (15.0)	
	교원 (초중고)	309 (17.2) (7.1)	1489 (82.8) (34.4)	1798 (100.0) (41.5)	
소재지별	시지역	647 (23.1) (14.9)	2149 (76.9) (49.6)	2796 (100.0) (64.6)	X^2=0.446 df=1 p=.504
	군지역	369 (24.0) (8.5)	1166 (76.0) (26.9)	1535 (100.0) (35.4)	
총계		1016 (23.5)	3315 (76.5)	4331 (100.0)	-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근무 급별	초등교사	25 (2.7) (1.4)	904 (97.3) (50.3)	929 (100.0) (51.7)	X^2=283.984*** df=2 p=.000
	중등교사 (공사립)	155 (33.3) (8.6)	311 (66.7) (17.3)	466 (100.0) (25.9)	
	고등교사 (공사립)	129 (32.0) (7.2)	274 (68.0) (15.2)	403 (100.0) (22.4)	
재직연수	4년이하	64 (18.8) (3.6)	277 (81.2) (15.4)	341 (100.0) (19.0)	X^2=20.562*** df=3 p=.000
	5년이상-9년이하	48 (14.6) (2.7)	281 (85.4) (15.6)	329 (100.0) (18.3)	
	10년이상-19년이하	57 (11.9) (3.2)	423 (88.1) (23.5)	480 (100.0) (26.7)	
	20년 이상	140 (21.6) (7.8)	508 (78.4) (28.3)	648 (100.0) (36.0)	
총계		309 (17.2)	1489 (82.8)	1798 (100.0)	-

* $p<.05$, ** $p<.01$, *** $p<.001$

4. 학생들 주도의 학교 행사 계획 진행 유무(초중고학생, 교원)

우리 학교는 학교 행사를 학생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18>와 같음

▣ 전체적으로 학생들 주도의 학교 행사 계획 진행 여부에 대해 초중고학생과 교원은 “그렇다”(53.4%), “아니다”(46.6%) 순으로 나타남. **초중고학생 및 교원은 46.6%가 학생들 주도의 학교 행사 계획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대상별, 소재지별, 교원의 근무급별, 재직연수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 학생들 주도의 학교 행사 계획 진행 여부에 대해 초등학교 “아니다”(60.2%), 중학교 “아니다”(37.7%), 고등학교 “아니다”(23.9%)로 초중고등학교 순으로 학생 주도의 학교 행사 계획 진행이 안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남(X^2=419.261, p<.001).
- 대상별 : 초등학생 “아니다”(54.3%), 중학생 “아니다”(40.8%), 고등학생 “아니다”(21.1%), 교원 ”아니다“(51.2%)로 초등학생과 교원 50%이상이 학생들 주도의 학교행사 계획 진행이 안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X^2=225.596, p<.001).
- 소재지별 : 시지역 “아니다”(50.2%), 군지역 “아니다”(40.2%) 순으로 군지역보다는 시지역에서 학생들 주도의 학교행사 계획 진행이 안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X^2=39.686, p<.001).
- 교원 전체의 학생들 주도의 학교 행사 계획 진행 여부에 대해 “아니다”(51.2%), “그렇다”(48.8%) 순으로 나타남. **교원 51.2%가 학생들 주도의 학교 행사 계획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교원의 근무급별 : 교원의 근무급별 초등교사 “아니다.”(69.2%), 중등교사 “아니다”(35.2%), 고등교사 “아니다”(28.3%)로 초중고등학교 교사순으로 학생들 주도의 학교 행사 계획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응답함(X^2=253.124, p<.001).

– 재직연수별 : 교원의 재직연수별 4년이하 “아니다”(48.4%), 5년이상–9년이하 “아니다”(57.1%), 10년이상–19년이하 “아니다”(57.1%), 20년이상 “그렇다”(45.4%)로 나타남(X^2=21.194, $p<.001$). 5년이상–9년이하, 10년이상–19년 이하의 교원들 57.1%가 학생들 주도의 학교 행사 계획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함.

<표Ⅱ–18> 학생들 주도의 학교 행사 계획 진행 유무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학교 급별	초등학교	942 (39.8) (21.8)	1422 (60.2) (32.8)	2364 (100.0) (54.6)	X^2=419.261*** df=2 p=.000
	중학교 (공사립)	579 (62.3) (13.4)	350 (37.7) (8.1)	929 (100.0) (21.5)	
	고등학교 (공사립)	790 (76.1) (18.2)	248 (23.9) (5.7)	1038 (100.0) (24.0)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656 (45.7) (15.1)	779 (54.3) (18.0)	1435 (100.0) (33.1)	X^2=225.596*** df=3 p=.000
	중학생 (1-3학년)	265 (59.2) (6.1)	183 (40.8) (4.2)	448 (100.0) (10.3)	
	고등학생 (1-3학년)	513 (78.9) (11.8)	137 (21.1) (3.2)	650 (100.0) (15.0)	
	교원 (초중고)	877 (48.8) (20.2)	921 (51.2) (21.3)	1798 (100.0) (41.5)	
소재지별	시지역	1393 (49.8) (32.2)	1403 (50.2) (32.4)	2796 (100.0) (64.6)	X^2=39.686*** df=1 p=.000
	군지역	918 (59.8) (21.2)	617 (40.2) (14.2)	1535 (100.0) (35.4)	
총계		2311 (53.4)	2020 (46.6)	4331 (100.0)	-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근무 급별	초등교사	286 (30.8) (15.9)	643 (69.2) (35.8)	929 (100.0) (51.7)	X^2=253.124*** df=2 p=.000

	중등교사 (공사립)	302 (64.8) (16.8)	164 (35.2) (9.1)	466 (100.0) (25.9)	
	고등교사 (공사립)	289 (71.7) (16.1)	114 (28.3) (6.3)	403 (100.0) (22.4)	
재직연수	4년이하	176 (51.6) (9.8)	165 (48.4) (9.2)	341 (100.0) (19.0)	X^2=21.194*** df=3 p=.000
	5년이상-9년이하	141 (42.9) (7.8)	188 (57.1) (10.5)	329 (100.0) (18.3)	
	10년이상-19년이하	206 (42.9) (11.5)	274 (57.1) (15.2)	480 (100.0) (26.7)	
	20년 이상	354 (54.6) (19.7)	294 (45.4) (16.4)	648 (100.0) (36.0)	
총계		877 (48.8)	921 (51.2)	1798 (100.0)	-

* p<.05, ** p<.01, *** p<.001

5.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 유무(초중고학생, 교원)

우리 학교의 학생 두발 및 용의복장을 규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19>와 같음

▣ 전체적으로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 여부에 대해 초중고학생과 교원은 “아니다”(67.9%), “그렇다”(32.1%) 순으로 나타남. 초중고학생 및 교원 32.1%가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을 규제하고 있다고 응답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대상별, 교원의 근무급별, 재직연수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에 대해 초등학교 “그렇다”(8.1%), 중학교 “그렇다”(58.9%), 고등학교 “그렇다”(62.9%)로 중고등학교에서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가 높게 나타남(X^2=1383.149, p<.001).
- 대상별 : 초등학생 “그렇다”(11.9%), 중학생 “그렇다”(71.2%), 고등학생

"그렇다"(72.3%), 교원 "그렇다"(24.0%)로 초등학생과 교원은 "아니다"에 높게 응답한 반면, 중고등학생 71.2% 이상이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가 있는 것으로 높게 응답함(X^2=1118.847, p<.001).

- 교원 전체의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 여부에 대해 "그렇다"(76.0%), "그렇다"(24.0%) 순으로 나타남. 교원 24%는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 교원의 근무급별 : 교원의 근무급별 초등교사 "그렇다"(2.2%), 중등교사 "그렇다"(46.1%), 고등교사 "그렇다"(48.6%)로 응답함(X^2=502.803, p<.001).
- 재직연수별 : 교원의 재직연수별 4년이하 "그렇다"(23.8%), 5년이상-9년이하 "그렇다"(16.4%), 10년이상-19년이하 "그렇다"(15.8%), 20년 이상 "그렇다"(34.0%)로 나타남(X^2=63.172, p<.001). 20년 이상의 교원이 34.0%로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를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표Ⅱ-19>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 유무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학교급별	초등학교	191 (8.1) (4.4)	2173 (91.9) (50.2)	2364 (100.0) (54.6)	X^2=1383.149*** df=2 p=.000
	중학교 (공사립)	547 (58.9) (12.6)	382 (41.1) (8.8)	929 (100.0) (21.5)	
	고등학교 (공사립)	653 (62.9) (15.1)	385 (37.1) (8.9)	1038 (100.0) (24.0)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171 (11.9) (3.9)	1264 (88.1) (29.2)	1435 (100.0) (33.1)	X^2=1118.847*** df=3 p=.000
	중학생 (1-3학년)	319 (71.2) (7.4)	129 (28.8) (3.0)	448 (100.0) (10.3)	
	고등학생 (1-3학년)	470 (72.3) (10.9)	180 (27.7) (4.2)	650 (100.0) (15.0)	
	교원 (초중고)	431 (24.0) (10.0)	1367 (76.0) (31.6)	1798 (100.0) (41.5)	

소재지별	시지역	890 (31.8) (20.5)	1906 (68.2) (44.0)	2796 (100.0) (64.6)	X^2=0.296 df=1 p=.586
	군지역	501 (32.6) (11.6)	1034 (67.4) (23.9)	1535 (100.0) (35.4)	
총계		1391 (32.1)	2940 (67.9)	4331 (100.0)	-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근무급별	초등교사	20 (2.2) (1.1)	909 (97.8) (50.6)	929 (100.0) (51.7)	X^2=502.803*** df=2 p=.000
	중등교사 (공사립)	215 (46.1) (12.0)	251 (53.9) (14.0)	466 (100.0) (25.9)	
	고등교사 (공사립)	196 (48.6) (10.9)	207 (51.4) (11.5)	403 (100.0) (22.4)	
재직연수	4년이하	81 (23.8) (4.5)	260 (76.2) (14.5)	341 (100.0) (19.0)	X^2=63.172*** df=3 p=.000
	5년이상-9년이하	54 (16.4) (3.0)	275 (83.6) (15.3)	329 (100.0) (18.3)	
	10년이상-19년이하	76 (15.8) (4.2)	404 (84.2) (22.5)	480 (100.0) (26.7)	
	20년 이상	220 (34.0) (12.2)	428 (66.0) (23.8)	648 (100.0) (36.0)	
총계		431 (24.0)	1367 (76.0)	1798 (100.0)	-

* p<.05, ** p<.01, *** p<.001

6. 학교내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는 유무(초중고학생, 교원)

우리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20>와 같음

▣ 전체적으로 학교내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는 여부에 대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은 “아니다”(53.4%), “그렇다”(46.6%) 순으로 나타남. **초중고학생 및 교원 46.6%가 학교내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는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대상별, 소재지별, 교원의 근무급별, 재직연수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 학교 내학생의 휴대전화를 걷는 여부에 대해 초등학교 “그렇다”(21.0%), 중학교 “그렇다”(88.2%), 고등학교 “그렇다”(67.7%)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학교내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고 있는 것으로 높게 응답함**(X^2=1452.341, p<.001).
- 대상별 : 초등학생 “그렇다”(27.0%), 중학생 “그렇다”(87.7%), 고등학생 “그렇다”(75.2%), 교원 ”그렇다“(41.7%)로 중학생, 고등학생, 교원, 초등학생 순으로 휴대전화를 걷는 것에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X^2=756.855, p<.001).
- 소재지별 : 시지역 “그렇다”(44.5%), 군지역 “그렇다”(50.6%)로 시지역보다는 군지역에서 학교내 학생의 휴대전화를 높게 걷는 것으로 나타남(X^2=14.805, p<.001).
- 교원 전체의 학교내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는 진행 여부에 대해 “아니다”(58.3%), “그렇다”(41.7%) 순으로 나타남. **교원 41.7%가 학교내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는다고 응답함.**
- 교원의 근무급별 : 교원의 근무급별 초등교사 “그렇다.”(11.7%), 중등교사 “그렇다”(88.2%), 고등교사 “그렇다”(56.8%)로 초등교사보다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학교내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고 있다고 높게 응답함(X^2=795.725, p<.001).
- 재직연수별 : 교원의 재직연수별 4년이하 “그렇다”(43.1%), 5년이상-9년이하 “그렇다”(31.0%), 10년이상-19년이하 “그렇다”(27.3%), 20년이상 “그렇다”(56.9%)로 나타남(X^2=118.728, p<.001). 20년 이상의 교원이 학교내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는 것에 높게 응답함.

<표Ⅱ-20> 학교내 학생의 휴대전화 걷는 유무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학교 급별	초등학교	497 (21.0) (11.5)	1867 (79.0) (43.1)	2364 (100.0) (54.6)	X^2=1452.341*** df=2

	중학교 (공사립)	819 (88.2) (18.9)	110 (11.8) (2.5)	929 (100.0) (21.5)	p=.000
	고등학교 (공사립)	703 (67.7) (16.2)	335 (32.3) (7.7)	1038 (100.0) (24.0)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388 (27.0) (9.0)	1047 (73.0) (24.2)	1435 (100.0) (33.1)	X^2=756.855*** df=3 p=.000
	중학생 (1-3학년)	393 (87.7) (9.1)	55 (12.3) (1.3)	448 (100.0) (10.3)	
	고등학생 (1-3학년)	489 (75.2) (11.3)	161 (24.8) (3.7)	650 (100.0) (15.0)	
	교원 (초중고)	749 (41.7) (17.3)	1049 (58.3) (24.2)	1798 (100.0) (41.5)	
소재지별	시지역	1243 (44.5) (28.7)	1553 (55.5) (35.9)	2796 (100.0) (64.6)	X^2=14.805*** df=1 p=.000
	군지역	776 (50.6) (17.9)	759 (49.4) (17.5)	1535 (100.0) (35.4)	
총계		2019 (46.6)	2312 (53.4)	4331 (100.0)	-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안니다.	계	
근무 급별	초등교사	109 (11.7) (6.1)	820 (88.3) (45.6)	929 (100.0) (51.7)	X^2=795.725*** df=2 p=.000
	중등교사 (공사립)	411 (88.2) (22.9)	55 (11.8) (3.1)	466 (100.0) (25.9)	
	고등교사 (공사립)	229 (56.8) (12.7)	174 (43.2) (9.7)	403 (100.0) (22.4)	
재직연수	4년이하	147 (43.1) (8.2)	194 (56.9) (10.8)	341 (100.0) (19.0)	X^2=118.728*** df=3 p=.000
	5년이상-9년이하	102 (31.0) (5.7)	227 (69.0) (12.6)	329 (100.0) (18.3)	
	10년이상- 19년이하	131 (27.3) (7.3)	349 (72.7) (19.4)	480 (100.0) (26.7)	
	20년 이상	369 (56.9) (20.5)	279 (43.1) (15.5)	648 (100.0) (36.0)	
총계		749 (41.7)	1049 (58.3)	1798 (100.0)	-

* p<.05, ** p<.01, *** p<.001

7. 학생들의 성적으로 차별하는 유무(초중고학생)

우리 학교는 학생의 성적으로 차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21>와 같음

▣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으로 차별 여부에 대해 초중고학생은 “아니다” (83.5%), “아니다”(16.5%) 순으로 나타남. 초중고학생은 16.5%가 학생들의 성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대상별,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 : 초등학생 “그렇다”(5.8%), 중학생 “그렇다”(24.3%), 고등학생 “그렇다”(34.8%)로 나타남(X^2=296.976, $p<.001$).
- 학년별 : 초등4학년 “그렇다”(4.1%), 초등5학년 “그렇다”(6.2%), “초등6학년” 그렇다“(7.4%), 중1학년” “그렇다”(16.3), 중2학년 “그렇다”(27.9%), 중3학년 “그렇다”(27.1%), 고1학년 “그렇다”(31.6%), 고2학년 ”그렇다”(39.1%), 고3학년 “그렇다”(6.9%)로 나타남. 중2,3학년, 고1,2학년에서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고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표Ⅱ-21> 학생들의 성적으로 차별하는 유무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대상별	초등학생(4-6학년)	83 (5.8) (3.3)	1352 (94.2) (53.4)	1435 (100.0) (56.7)	X^2=296.976*** df=2 p=.000
	중학생 (1-3학년)	109 (24.3) (4.3)	339 (75.7) (13.4)	448 (100.0) (17.7)	
	고등학생 (1-3학년)	226 (34.8) (8.9)	424 (65.2) (16.7)	650 (100.0) (25.7)	
소재지별	시지역	268 (16.5) (10.6)	1355 (83.5) (53.5)	1623 (100.0) (64.1)	X^2=0.000 df=1 p=.985
	군지역	150 (16.5) (5.9)	760 (83.5) (30.0)	910 (100.0) (35.9)	

학년별	초등학생 (4학년)	21 (4.1) (0.8)	486 (95.9) (19.2)	507 (100.0) (20.0)	X^2=330.543*** df=8 p=.000
	초등학생 (5학년)	33 (6.2) (1.3)	501 (93.8) (19.8)	534 (100.0) (21.1)	
	초등학생 (6학년)	29 (7.4) (1.1)	365 (92.6) (14.4)	394 (100.0) (15.6)	
	중학생 (1학년)	21 (16.3) (0.8)	108 (83.7) (4.3)	129 (100.0) (5.1)	
	중학생 (2학년)	56 (27.9) (2.2)	145 (72.1) (5.7)	201 (100.0) (7.9)	
	중학생 (3학년)	32 (27.1) (1.3)	86 (72.9) (3.4)	118 (100.0) (4.7)	
	고등학생 (1학년)	80 (31.6) (3.2)	173 (68.4) (6.8)	253 (100.0) (10.0)	
	고등학생 (2학년)	144 (39.1) (5.7)	224 (60.9) (8.8)	368 (100.0) (14.5)	
	고등학생 (3학년)	2 (6.9) (0.1)	27 (93.1) (1.1)	29 (100.0) (1.1)	
총계		418 (16.5)	2115 (83.5)	2533 (100.0)	-

* p<.05, ** p<.01, *** p<.001

8. 학생들의 성적 공개 유무(교원)

우리 학교는 학생의 성적을 공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22>와 같음

▣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지에 대해 교원들은 “아니다”(95.3%), “그렇다”(4.7%) 순으로 나타남. 4.7%의 교원이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재직연수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지에 대해 초등학교 “그렇다”(1.7%), 중학교 “그렇다”(6.0%), 고등학교 “그렇다”(10.2%)로 고중초순으로 학생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남(X^2=46.866, p<.001).
- 재직연수별 : 교원의 재직연수별 4년이하 “그렇다”(3.5%), 5년이상-9년이하 “그렇다”(3.3%), 10년이상-19년이하 “그렇다”(2.9%), 20년 이상 “그렇다”(7.4%)로 나타남(X^2=16.332, p<.001). 20년 이상의 교원이 학생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에 다소 높게 응답함.

<표Ⅱ-22> 학생들의 성적 공개 유무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학교급별	초등학교	16 (1.7) (0.9)	913 (98.3) (50.8)	929 (100.0) (51.7)	X^2=46.866*** df=2 p=.000
	중학교 (공사립)	28 (6.0) (1.6)	438 (94.0) (24.4)	466 (100.0) (25.9)	
	고등학교 (공사립)	41 (10.2) (2.3)	362 (89.8) (20.1)	403 (100.0) (22.4)	
소재지별	시지역	56 (4.8) (3.1)	1117 (95.2) (62.1)	1173 (100.0) (65.2)	X^2=0.016 df=1 p=.898
	군지역	29 (4.6) (1.6)	596 (95.4) (33.1)	625 (100.0) (34.8)	
재직연수	4년이하	12 (3.5) (0.7)	329 (96.5) (18.3)	341 (100.0) (19.0)	X^2=16.332** df=3 p=.001
	5년이상-9년이하	11 (3.3) (0.6)	318 (96.7) (17.7)	329 (100.0) (18.3)	
	10년이상-19년이하	14 (2.9) (0.8)	466 (97.1) (25.9)	480 (100.0) (26.7)	
	20년 이상	48 (7.4) (2.7)	600 (92.6) (33.4)	648 (100.0) (36.0)	
총계		85 (4.7)	1713 (95.3)	1798 (100.0)	-

* p<.05, ** p<.01, *** p<.001

9.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행사 운영 유무(초중고학생, 교원)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23>와 같음

▣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 운영 여부에 대해 초중고학생과 교원은 "아니다"(61.3%), "그렇다"(38.7%) 순으로 나타남. **초중고학생 및 교원 61.3%가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대상별, 소재지별, 교원의 근무급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 운영 여부에 대해 초등학교 "아니다"(57.4%), 중학교 "아니다"(60.8%), 고등학교 "아니다"(70.4%)로 높게(X^2=51.625, p<.001).
- 대상별 : 초등학생 "아니다"(50.2%), 중학생 "아니다"(59.8%), 고등학생 "아니다"(69.4%), 교원 "아니다"(67.5%)로 **초중고등학교, 교원 모두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를 하지 않는 것에 50%이상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X^2=122.460, p<.001).
- 소재지별 : 시지역 "아니다"(59.3%), 군지역 "아니다"(64.9%)로 시군지역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 운영을 높게 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함(X^2=13.201, p<.001).
- 교원 전체의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 운영 여부에 대해 "아니다"(67.5%), "그렇다"(32.5%) 순으로 나타남. 교**원 67.5%가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교원의 근무급별 : 교원의 근무급별 초등교사 "아니다."(68.6%), 중등교사 "아니다"(61.6%), 고등교사 "아니다"(72.0%)로 높게 응답함(X^2=11.566, p<.01).

<표Ⅱ-23>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 운영 유무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학교 급별	초등학교	1007 (42.6) (23.3)	1357 (57.4) (31.3)	2364 (100.0) (54.6)	X^2=51.625*** df=2

	중학교 (공사립)	364 (39.2) (8.4)	565 (60.8) (13.0)	929 (100.0) (21.5)	p=.000
	고등학교 (공사립)	307 (29.6) (7.1)	731 (70.4) (16.9)	1038 (100.0) (24.0)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715 (49.8) (16.5)	720 (50.2) (16.6)	1435 (100.0) (33.1)	X^2=122.460*** df=3 p=.000
	중학생 (1-3학년)	180 (40.2) (4.2)	268 (59.8) (6.2)	448 (100.0) (10.3)	
	고등학생 (1-3학년)	199 (30.6) (4.6)	451 (69.4) (10.4)	650 (100.0) (15.0)	
	교원 (초중고)	584 (32.5) (13.5)	1214 (67.5) (28.0)	1798 (100.0) (41.5)	
소재지별	시지역	1139 (40.7) (26.3)	1657 (59.3) (38.3)	2796 (100.0) (64.6)	X^2=13.201*** df=1 p=.000
	군지역	539 (35.1) (12.4)	996 (64.9) (23.0)	1535 (100.0) (35.4)	
총계		1678 (38.7)	2653 (61.3)	4331 (100.0)	-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근무급별	초등교사	292 (31.4) (16.2)	637 (68.6) (35.4)	929 (100.0) (51.7)	X^2=11.566** df=2 p=.003
	중등교사 (공사립)	179 (38.4) (10.0)	287 (61.6) (16.0)	466 (100.0) (25.9)	
	고등교사 (공사립)	113 (28.0) (6.3)	290 (72.0) (16.1)	403 (100.0) (22.4)	
재직연수	4년이하	125 (36.7) (7.0)	216 (63.3) (12.0)	341 (100.0) (19.0)	X^2=7.657 df=3 p=.054
	5년이상-9년이하	119 (36.2) (6.6)	210 (63.8) (11.7)	329 (100.0) (18.3)	
	10년이상-19년이하	147 (30.6) (8.2)	333 (69.4) (18.5)	480 (100.0) (26.7)	
	20년 이상	193 (29.8) (10.7)	455 (70.2) (25.3)	648 (100.0) (36.0)	
총계		584 (32.5)	1214 (67.5)	1798 (100.0)	-

* p<.05, ** p<.01, *** p<.001

10.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 유무(초중고학생, 교원)

우리 학교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24>와 같음

▣ 전체적으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 초중고 학생과 교원은 “그렇다”(74.3%), “아니다”(25.7%) 순으로 나타남. <u>초중고 학생 및 교원 25.7%가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u>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대상별, 소재지별, 교원의 근무급별, 재직연수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 초등학교 “아니다”(27.5%), 중학교 “아니다”(21.1%), 고등학교 “아니다”(25.5%)로 초고중순으로 높게 나타남(X^2=14.324, p<.01).
- 대상별 : 초등학생 “아니다”(28.2%), 중학생 “아니다”(34.2%), 고등학생 “아니다”(33.4%), 교원 ”아니다“(18.7%)로 <u>교원보다는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되지 않는다고 높게 응답함</u>(X^2=87.085, p<.001).
- 교원 전체의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 “그렇다”(81.3%), “아니다”(18.7%) 순으로 나타남. <u>교원 18.7%가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함.</u>
- 교원의 근무급별 : 교원의 근무급별 초등교사 “아니다.”(26.5%), 중등교사 “아니다”(8.4%), 고등교사 “아니다”(12.9%)로 중고등학교 교사보다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높게 응답함(X^2=78.467, p<.001).
- 재직연수별 : 교원의 재직연수별 4년이하 “아니다”(22.0%), 5년이상-9년이하 “아니다”(19.8%), 10년이상-19년이하 “아니다”(24.0%), 20년 이상 “아니다”(12.7%)로 나타남(X^2=26.934, p<.001). 재직연수가 낮을수록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Ⅱ-24>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 유무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학교 급별	초등학교	1714 (72.5) (39.6)	650 (27.5) (15.0)	2364 (100.0) (54.6)	X^2=14.324** df=2 p=.001
	중학교 (공사립)	733 (78.9) (16.9)	196 (21.1) (4.5)	929 (100.0) (21.5)	
	고등학교 (공사립)	773 (74.5) (17.8)	265 (25.5) (6.1)	1038 (100.0) (24.0)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1031 (71.8) (23.8)	404 (28.2) (9.3)	1435 (100.0) (33.1)	X^2=87.085*** df=3 p=.000
	중학생 (1-3학년)	295 (65.8) (6.8)	153 (34.2) (3.5)	448 (100.0) (10.3)	
	고등학생 (1-3학년)	433 (66.6) (10.0)	217 (33.4) (5.0)	650 (100.0) (15.0)	
	교원 (초중고)	1461 (81.3) (33.7)	337 (18.7) (7.8)	1798 (100.0) (41.5)	
소재지별	시지역	2047 (73.2) (47.3)	749 (26.8) (17.3)	2796 (100.0) (64.6)	X^2=5.338* df=1 p=.021
	군지역	1173 (76.4) (27.1)	362 (23.6) (8.4)	1535 (100.0) (35.4)	
총계		3220 (74.3)	1111 (25.7)	4331 (100.0)	-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근무 급별	초등교사	683 (73.5) (38.0)	246 (26.5) (13.7)	929 (100.0) (51.7)	X^2=78.467*** df=2 p=.000
	중등교사 (공사립)	427 (91.6) (23.7)	39 (8.4) (2.2)	466 (100.0) (25.9)	
	고등교사 (공사립)	351 (87.1) (19.5)	52 (12.9) (2.9)	403 (100.0) (22.4)	
재직연수	4년이하	266 (78.0) (14.8)	75 (22.0) (4.2)	341 (100.0) (19.0)	X^2=26.934*** df=3 p=.000
	5년이상-9년이하	264 (80.2) (14.7)	65 (19.8) (3.6)	329 (100.0) (18.3)	
	10년이상-19년이하	365 (76.0) (20.3)	115 (24.0) (6.4)	480 (100.0) (26.7)	
	20년 이상	566 (87.3) (31.5)	82 (12.7) (4.6)	648 (100.0) (36.0)	
총계		1461 (81.3)	337 (18.7)	1798 (100.0)	-

* $p<.05$, ** $p<.01$, *** $p<.001$

11.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강제 운영 유무(초중고학생)

우리 학교는 방과후학교 또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25>와 같음

▣ 전체적으로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강제 운영 여부에 대해 초중고학생은 "아니다"(81.8%), "그렇다"(18.2%) 순으로 나타남. **초중고학생 18.2%가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대상별, 소재지별, 학년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 : 초등학생 "그렇다"(6.4%), 중학생 "그렇다"(27.2%), 고등학생 "그렇다"(38.0%)로 **초중고 순으로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강제 운영하는 것으로 높게 나타남**(X^2=329.677, p<.001).
- 소재지별 : 시지역 "그렇다"(16.1%), 군지역 "그렇다"(21.9%)로 시지역보다는 군지역에서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강제 운영이 높게 나타남(X^2=12.838, p<.001).
- 학년별 : 초등4학년 "그렇다"(3.4%), 초등5학년 "그렇다"(8.1%), 초등6학년 "그렇다"(8.1%), 중1학년 "그렇다"(20.2%), 중2학년 "그렇다"(32.8%), 중3학년 "그렇다"(25.4%), 고1학년 "그렇다"(32.8%), 고2학년 "그렇다"(42.9%), 고3학년 "그렇다"(20.7%)로 나타남.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2학년에서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강제 운영이 높게 나타남**(X^2=359.882, p<.001).

<표Ⅱ-25>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강제 운영 유무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92 (6.4) (3.6)	1343 (93.6) (53.0)	1435 (100.0) (56.7)	X^2=329.677*** df=2 p=.000

	중학생 (1-3학년)	122 (27.2) (4.8)	326 (72.8) (12.9)	448 (100.0) (17.7)	
	고등학생 (1-3학년)	247 (38.0) (9.8)	403 (62.0) (15.9)	650 (100.0) (25.7)	
소재지별	시지역	262 (16.1) (10.3)	1361 (83.9) (53.7)	1623 (100.0) (64.1)	X^2=12.838*** df=1 p=.000
	군지역	199 (21.9) (7.9)	711 (78.1) (28.1)	910 (100.0) (35.9)	
학년별	초등학생 (4학년)	17 (3.4) (0.7)	490 (96.6) (19.3)	507 (100.0) (20.0)	X^2=359.882*** df=8 p=.000
	초등학생 (5학년)	43 (8.1) (1.7)	491 (91.9) (19.4)	534 (100.0) (21.1)	
	초등학생 (6학년)	32 (8.1) (1.3)	362 (91.9) (14.3)	394 (100.0) (15.6)	
	중학생 (1학년)	26 (20.2) (1.0)	103 (79.8) (4.1)	129 (100.0) (5.1)	
	중학생 (2학년)	66 (32.8) (2.6)	135 (67.2) (5.3)	201 (100.0) (7.9)	
	중학생 (3학년)	30 (25.4) (1.2)	88 (74.6) (3.5)	118 (100.0) (4.7)	
	고등학생 (1학년)	83 (32.8) (3.3)	170 (67.2) (6.7)	253 (100.0) (10.0)	
	고등학생 (2학년)	158 (42.9) (6.2)	210 (57.1) (8.3)	368 (100.0) (14.5)	
	고등학생 (3학년)	6 (20.7) (0.2)	23 (79.3) (0.9)	29 (100.0) (1.1)	
총계		461 (18.2)	2072 (81.8)	2533 (100.0)	-

* p<.05, ** p<.01, *** p<.001

12. 학교게시판이나 누리집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 유무(초중고학생)

우리 학교는 학교게시판이나 누리집(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의견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26>와 같음

▣ 전체적으로 학교게시판이나 누리집(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의견을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초중고학생은 “그렇다”(80.7%), “아니다”(19.3%) 순으로 나타남. **초중고학생 19.2%가 학교게시판이나 누리집에 자유롭게 의견을 쓸 수 없다고 응답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별, 대상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별 : 초등학교 “아니다”(12.1%), 공립중 “아니다”(26.7%), 사립중 “아니다”(24.8%), 공립고 “아니다”(33.7%), 사립고 “아니다”(27.5%)로 나타남(X^2=119.458, p<.001).
- 대상별 : 초등학생 “아니다”(12.1%), 중학생 “아니다”(25.9%), 고등학생 “아니다”(30.8%)로 **고중초 순으로 학교게시판이나 누리집에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X^2=115.727, p<.001).

<표Ⅱ-26> 학교게시판이나 누리집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 유무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학교별	초등학교	1262 (87.9) (49.8)	173 (12.1) (6.8)	1435 (100.0) (56.7)	X^2=119.458*** df=4 p=.000
	공립중	236 (73.3) (9.3)	86 (26.7) (3.4)	322 (100.0) (12.7)	
	사립중	106 (75.2) (4.2)	35 (24.8) (1.4)	141 (100.0) (5.6)	
	공립고	216 (66.3) (8.5)	110 (33.7) (4.3)	326 (100.0) (12.9)	
	사립고	224 (72.5) (8.8)	85 (27.5) (3.4)	309 (100.0) (12.2)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1262 (87.9) (49.8)	173 (12.1) (6.8)	1435 (100.0) (56.7)	X^2=115.727*** df=2 p=.000
	중학생 (1-3학년)	332 (74.1) (13.1)	116 (25.9) (4.6)	448 (100.0) (17.7)	
	고등학생 (1-3학년)	450 (69.2) (17.8)	200 (30.8) (7.9)	650 (100.0) (25.7)	
소재지별	시지역	1315 (81.0) (51.9)	308 (19.0) (12.2)	1623 (100.0) (64.1)	X^2=0.312 df=1 p=.576
	군지역	729 (80.1) (28.8)	181 (19.9) (7.1)	910 (100.0) (35.9)	
총계		2044 (80.7)	489 (19.3)	2533 (100.0)	-

* p<.05, ** p<.01, *** p<.001

13.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 유무(초중고학생)

우리 학교는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27>와 같음

▣ 전체적으로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초중고학생은 "그렇다"(56.6%), "아니다"(43.4%) 순으로 나타남. **초중고학생 43.4%가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대상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 :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는지에 대해 초등학생 "아니다"(39.4%), 중학생 "아니다"(45.3%), 고등학생 "아니다"(50.8%)로 고중초 순으로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X^2=24.188, p<.001).

<표Ⅱ-27>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 유무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869 (60.6) (34.3)	566 (39.4) (22.3)	1435 (100.0) (56.7)	X^2=24.188*** df=2 p=.000

	중학생 (1-3학년)	245 (54.7) (9.7)	203 (45.3) (8.0)	448 (100.0) (17.7)	
	고등학생 (1-3학년)	320 (49.2) (12.6)	330 (50.8) (13.0)	650 (100.0) (25.7)	
소재 지별	시지역	942 (58.0) (37.2)	681 (42.0) (26.9)	1623 (100.0) (64.1)	X^2=3.750 df=1 p=.053
	군지역	492 (54.1) (19.4)	418 (45.9) (16.5)	910 (100.0) (35.9)	
총계		1434 (56.6)	1099 (43.4)	2533 (100.0)	-

* p<.05, ** p<.01, *** p<.001

14. 언제든 자유로운 보건실 사용 유무(초중고학생)

우리 학교는 보건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28>와 같음

▣ 전체적으로 언제든지 학교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초중고 학생은 “그렇다”(81.6%), “아니다”(18.4%) 순으로 나타남. **초중고학생 18.4%가 언제든지 학교 보건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응답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별, 대상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별 : 초등학교 “아니다”(11.9%), 공립중 “아니다”(28.0%), 사립중 “아니다”(35.5%), 공립고 “아니다”(28.2%), 사립고 “아니다”(20.7%)로 나타남(X^2=108.944, p<.001).
- 대상별 : 초등학생 “아니다”(11.9%), 중학생 “아니다”(30.2%), 고등학생 “아니다”(24.6%)로 중고초 순으로 학교 보건실을 쉽게 이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X^2=101.034, p<.001).

<표Ⅱ-28> 언제든 자유로운 보건실 사용 유무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학교별	초등학교	1264 (88.1) (49.9)	171 (11.9) (6.8)	1435 (100.0) (56.7)	X^2=108.944*** df=4 p=.000
	공립중	232 (72.0) (9.2)	90 (28.0) (3.6)	322 (100.0) (12.7)	
	사립중	91 (64.5) (3.6)	50 (35.5) (2.0)	141 (100.0) (5.6)	
	공립고	234 (71.8) (9.2)	92 (28.2) (3.6)	326 (100.0) (12.9)	
	사립고	245 (79.3) (9.7)	64 (20.7) (2.5)	309 (100.0) (12.2)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1264 (88.1) (49.9)	171 (11.9) (6.8)	1435 (100.0) (56.7)	X^2=101.034*** df=2 p=.000
	중학생 (1-3학년)	310 (69.8) (12.2)	138 (30.2) (5.4)	448 (100.0) (17.7)	
	고등학생 (1-3학년)	492 (75.4) (19.4)	158 (24.6) (6.2)	650 (100.0) (25.7)	
소재지별	시지역	1317 (81.1) (52.0)	306 (18.9) (12.1)	1623 (100.0) (64.1)	X^2=0.523 df=1 p=.469
	군지역	749 (82.3) (29.6)	161 (17.7) (6.4)	910 (100.0) (35.9)	
총계		2066 (81.6)	467 (18.4)	2533 (100.0)	-

* p<.05, ** p<.01, *** p<.001

15.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중고학생)

나는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29>와 같음

▣ 전체적으로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대해 “아니다”(81.1%), “그렇다”(18.9%) 순으로 나타남. **중고등학생 18.9%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대상별, 학년별, 소재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 : 중학생 “그렇다”(7.4%), 고등학생 “그렇다”(26.9%)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X^2=66.061, p<.001).
- 학년별 : 중1학년 “그렇다”(3.1%), 중2학년 “그렇다”(9.0%), 중3학년 “그렇다”(9.3%), 고1학년 “그렇다”(24.9%), 고2학년 “그렇다”(27.4%), 고3학년 “그렇다”(37.9%)로 나타남.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높게 나타남(X^2=71.242, p<.001).
- 소재지별 : 시지역 “그렇다”(14.9%), 군지역 “그렇다”(24.0%)로 시지역보다는 군지역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X^2=14.485, p<.001).

<표Ⅱ-29>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대상별	중학생 (1-3학년)	33 (7.4) (3.0)	415 (92.6) (37.8)	448 (100.0) (40.8)	X^2=66.061*** df=1 p=.000
	고등학생 (1-3학년)	175 (26.9) (15.9)	475 (73.1) (43.3)	650 (100.0) (59.2)	
학년별	중학교 (1학년)	4 (3.1) (0.4)	125 (96.9) (11.4)	129 (100.0) (11.7)	X^2=71.242*** df=5 p=.000
	중학생 (2학년)	18 (9.0) (1.6)	183 (91.0) (16.7)	201 (100.0) (18.3)	
	중학교 (3학년)	11 (9.3) (1.0)	107 (90.7) (9.7)	118 (100.0) (10.7)	
	고등학교 (1학년)	63 (24.9) (5.7)	190 (75.1) (17.3)	253 (100.0) (23.0)	
	고등학교 (2학년)	101 (27.4) (9.2)	267 (72.6) (24.3)	368 (100.0) (33.5)	
	고등학교 (3학년)	11	18	29	

		(37.9) (1.0)	(62.1) (1.6)	(100.0) (2.6)	
소재지별	시지역	91 (14.9) (8.3)	519 (85.1) (47.3)	610 (100.0) (55.6)	X^2=14.485*** df=1 p=.000
	군지역	117 (24.0) (10.7)	371 (76.0) (33.8)	488 (100.0) (44.4)	
총계		208 (18.9)	890 (81.1)	1098 (100.0)	-

* p<.05, ** p<.01, *** p<.001

16.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부당한 대우 경험 유무(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중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30>와 같음

▣ 전체적으로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부당한 대우 경험 여부에 대해 “아니다”(63.9%), “그렇다”(36.1%) 순으로 나타남. **중고등학생 36.1%가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부당한 대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대상별, 학년별, 소재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빈도별로 살펴보면,

- 대상별 : 중학생 “그렇다”(33.3%), 고등학생 “그렇다”(36.6%)로 고등학생이 부당한 대우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X^2=0.126, p=.722).
- 학년별 : 중1학년 “그렇다”(25.0%), 중2학년 “그렇다”(38.9%), 중3학년 “그렇다”(27.3%), 고1학년 “그렇다”(31.3%), 고2학년 “그렇다”(38.0%), 고3학년 “그렇다”(54.5%)로 나타남. 고등학교 3학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부당한 대우 경험이 높게 나타남(X^2=3.079, p=.688).
- 소재지별 : 시지역 “그렇다”(38.5%), 군지역 “그렇다”(34.2%)로 군지역 보다는 시지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X^2=0.405, p=.524).

<표Ⅱ-30>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부당한 대우 경험 유무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대상별	중학생 (1-3학년)	11 (33.3) (5.3)	22 (66.7) (10.6)	33 (100.0) (15.9)	X^2=0.126 df=1 p=.722
	고등학생 (1-3학년)	64 (36.6) (30.8)	111 (63.4) (53.4)	175 (100.0) (84.1)	
학년별	중학교 (1학년)	1 (25.0) (0.5)	3 (75.0) (1.4)	4 (100.0) (1.9)	X^2=3.079 df=5 p=.688
	중학생 (2학년)	7 (38.9) (3.4)	11 (61.1) (5.3)	18 (100.0) (8.7)	
	중학교 (3학년)	3 (27.3) (1.4)	8 (72.7) (3.8)	11 (100.0) (5.3)	
	고등학교 (1학년)	20 (31.3) (9.6)	44 (68.8) (21.2)	64 (100.0) (30.8)	
	고등학교 (2학년)	38 (38.0) (18.3)	62 (62.0) (29.8)	100 (100.0) (48.1)	
	고등학교 (3학년)	6 (54.5) (2.9)	5 (45.5) (2.4)	11 (100.0) (5.3)	
소재지별	시지역	35 (38.5) (16.8)	56 (61.5) (26.9)	91 (100.0) (43.8)	X^2=0.405 df=1 p=.524
	군지역	40 (34.2) (19.2)	77 (65.8) (37.0)	117 (100.0) (56.3)	
총계		75 (36.1)	133 (63.9)	208 (100.0)	-

* $p<.05$, ** $p<.01$, *** $p<.001$

17.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부당한 대우의 경험 유형(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중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의 유형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표 Ⅱ-31>와 같음

▣ 전체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부당한 대우의 경험 유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36.0%), “최저임금(2017년도 기준시급:6,470원) 미만”(32.0%), “약속한 급여 미지급”(10.7%), “일방적인 해고”(9.3%), “정해진 근무시간 위반”(5.3%), “인권침해(성폭력, 욕설, 폭력, 차별 등)”(4.0%),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2.7%)순으로 나타남. 중고등학생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 가장 높게 부당한 대우 경험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대상별, 소재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빈도별로 살펴보면,

- 대상별 : 중학생 “근로계약서 미작성”(36.4%), 고등학생 “근로계약서 미작성”(35.9%), “최저임금 미만 지급”(34.4%)로 높게 나타남(X^2=4.971, p=.548).
- 소재지별 : 시지역 “근로계약서 미작성”(31.4%), “최저임금 미만 지급”(31.4%), 군지역 “근로계약서 미작성”(40.0%), “최저임금 미만 지급”(32.5%)로 높게 나타남(X^2=2.748, p=.840).

<표Ⅱ-31>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부당한 대우의 경험 유형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대상별	중학생 (1-3학년)	4 (36.4) (5.3)	1 (9.1) (1.3)	2 (18.2) (2.7)	2 (18.2) (2.7)	1 (9.1) (1.3)	0 (0.0) (0.0)	1 (9.1) (1.3)	11 (100.0) (14.7)	X^2=4.971 df=6 p=.548
	고등학생 (1-3학년)	23 (35.9) (30.7)	6 (9.4) (8.0)	6 (9.4) (8.0)	22 (34.4) (29.3)	2 (3.1) (2.7)	4 (6.3) (5.3)	1 (1.6) (1.3)	64 (100.0) (85.3)	
소재지별	시지역	11 (31.4) (14.7)	4 (11.4) (5.3)	5 (14.3) (6.7)	11 (31.4) (14.7)	2 (5.7) (2.7)	1 (2.9) (1.3)	1 (2.9) (1.3)	35 (100.0) (46.7)	X^2=2.748 df=6 p=.840
	군지역	16 (40.0) (21.3)	3 (7.5) (4.0)	3 (7.5) (4.0)	13 (32.5) (17.3)	1 (2.5) (1.3)	3 (7.5) (4.0)	1 (2.5) (1.3)	40 (100.0) (53.3)	
총계		27 (36.0)	7 (9.3)	8 (10.7)	24 (32.0)	3 (4.0)	4 (5.3)	2 (2.7)	75 (100.0)	-
응답내용		①근로계약서 미작성 ②일방적인 해고 ③약속한 급여 미지급 ④최저임금(2017년도 기준시급:6,470원) 미만 ⑤인권침해(성폭력, 욕설, 폭력, 차별 등) ⑥정해진 근무시간 위반 ⑦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 p<.05, ** p<.01, *** p<.001

18. 노동에 대한 부당 대우를 받을 경우 도움 요청 기관 인지 유무(중고학생, 교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32>와 같음

▣ 전체적으로 노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중고등학생과 교원은 "그렇다"(50.8%), "아니다"(49.2%) 순으로 나타남. **노동 부당 대우에 대한 도움 요청 기관에 대해 49.2%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대상별, 교원의 근무급별, 재직연수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 : 중학생 "아니다"(61.2%), 고등학생 "아니다"(46.6%), 교원 "아니다"(47.2%)로 노동 부당 대우에 대한 도움 요청 기관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X^2=30.363, p<.001).
- 교원 전체의 노동 부당 대우에 대한 도움 요청 기관 인지에 대해 "그렇다"(52.8%), "아니다"(47.2%) 순으로 나타남. **교원 47.2%가 노동 부당 대우에 대한 도움 요청 기관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원의 근무급별 : 교원의 근무급별 초등교사 "아니다."(58.4%), 중등교사 "아니다"(41.0%), 고등교사 "아니다"(28.3%)로 초중고순으로 노동 부당 대우에 대한 도움 요청 기관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X^2=112.242, p<.001).
- 재직연수별 : 교원의 재직연수별 4년이하 "아니다"(47.8%), 5년이상-9년이하 "아니다"(46.2%), 10년이상-19년이하 "아니다"(54.4%), 20년이상 "아니다"(42.0%)로 나타남(X^2=17.195, p<.01). **재직연수에 관계없이 교원 40%이상이 노동 부당 대우에 대한 도움 요청 기관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Ⅱ-32> 노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도움 요청 기관 인지 유무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대상별	중학생 (1-3학년)	174 (38.8) (6.0)	274 (61.2) (9.5)	448 (100.0) (15.5)	X^2=30.363*** df=2 p=.000
	고등학생 (1-3학년)	347 (53.4) (12.0)	303 (46.6) (10.5)	650 (100.0) (22.4)	
	교원 (초중고)	950 (52.8) (32.8)	848 (47.2) (29.3)	1798 (100.0) (62.1)	
소재지별	시지역	902 (50.6) (31.1)	881 (49.4) (30.4)	1783 (100.0) (61.6)	X^2=0.078 df=1 p=.780
	군지역	569 (51.1) (19.6)	544 (48.9) (18.8)	1113 (100.0) (38.4)	
총계		1471 (50.8)	1425 (49.2)	2896 (100.0)	-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그렇다.	아니다.	계	
근무급별	초등교사	386 (41.6) (21.5)	543 (58.4) (30.2)	929 (100.0) (51.7)	X^2=112.242*** df=2 p=.000
	중등교사 (공사립)	275 (59.0) (15.3)	191 (41.0) (10.6)	466 (100.0) (25.9)	
	고등교사 (공사립)	289 (71.7) (16.1)	114 (28.3) (6.3)	403 (100.0) (22.4)	
재직연수	4년이하	178 (52.2) (9.9)	163 (47.8) (9.1)	341 (100.0) (19.0)	X^2=17.195** df=3 p=.001
	5년이상-9년이하	177 (53.8) (9.8)	152 (46.2) (8.5)	329 (100.0) (18.3)	
	10년이상-19년이하	219 (45.6) (12.2)	261 (54.4) (14.5)	480 (100.0) (26.7)	
	20년 이상	376 (58.0) (20.9)	272 (42.0) (15.1)	648 (100.0) (36.0)	
총계		950 (52.8)	848 (47.2)	1798 (100.0)	-

* $p<.05$, ** $p<.01$, *** $p<.001$

19. 학생대상 인권교육 실시 정도(초중고학생)

우리 학교는 학생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33>와 같음

▣ 전체적으로 학생대상 인권교육 실시 정도 대해 초, 중, 고등학생은 "학기마다 2시간 이상"(52.5%), "1년에 1시간"(32.6%), "한번도 없다"(14.8%) 순으로 나타남. **1년에 1시간 이하 학생대상 인권교육을 실시가 47.4%인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대상별,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 : 초등학생 "학기마다 2시간 이상"(59.6%), 중학생 "학기마다 2시간 이상"(52.2%), 고등학생 "1년에 1시간"(42.5%)로 나타남(X^2=104.475, p<.001). **1년에 1시간 이하 인권교육 실시는 초등학생 40.4%, 중학생 47.7%, 고등학생 62.8%로 고중초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학년별 : 초등4학년 "1년에 1시간이하"(49.0%), 초등5학년 "1년에 1시간이하"(37.4%), 초등6학년 "1년에 1시간이하"(33.5%), 중1학년 "1년에 1시간이하"(43.5%), **중2학년 "1년에 1시간이하"(53.7%),** 중3학년 "1년에 1시간이하"(42.4%), **고1학년 "1년에 1시간이하"(62.4%), 고2학년 "1년에 1시간이하"(64.1%),** 고3학년 "1년에 1시간이하"(48.2%)로 나타남(X^2=162.502, p<.001).

<표Ⅱ-33> 학생대상 인권교육 실시 정도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한 번도 없다.	1년에 1시간	학기마다 2시간 이상	계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155 (10.8) (6.1)	425 (29.6) (16.8)	855 (59.6) (33.8)	1435 (100.0) (56.7)	X^2=104.475*** df=4 p=.000
	중학생 (1-3학년)	88 (19.6) (3.5)	126 (28.1) (5.0)	234 (52.2) (9.2)	448 (100.0) (17.7)	
	고등학생 (1-3학년)	132 (20.3) (5.2)	276 (42.5) (10.9)	242 (37.2) (9.6)	650 (100.0) (25.7)	

학년별	초등학교 (4학년)	88 (17.4) (3.5)	160 (31.6) (6.3)	259 (51.1) (10.2)	507 (100.0) (20.0)	X^2=162.502*** df=16 p=.000
	초등학교 (5학년)	38 (7.1) (1.5)	162 (30.3) (6.4)	334 (62.5) (13.2)	534 (100.0) (21.1)	
	초등학교 (6학년)	29 (7.4) (1.1)	103 (26.1) (4.1)	262 (66.5) (10.3)	394 (100.0) (15.6)	
	중학교 (1학년)	22 (17.1) (0.9)	34 (26.4) (1.3)	73 (56.5) (2.9)	129 (100.0) (5.1)	
	중학교 (2학년)	45 (22.4) (1.8)	63 (31.3) (2.5)	93 (46.3) (3.7)	201 (100.0) (7.9)	
	중학교 (3학년)	21 (17.8) (0.8)	29 (24.6) (1.1)	68 (57.6) (2.7)	118 (100.0) (4.7)	
	고등학교 (1학년)	37 (14.6) (1.5)	121 (47.8) (4.8)	95 (37.6) (3.8)	253 (100.0) (10.0)	
	고등학교 (2학년)	88 (23.9) (3.5)	148 (40.2) (5.8)	132 (35.9) (5.2)	368 (100.0) (14.5)	
	고등학생 (3학년)	7 (24.1) (0.3)	7 (24.1) (0.3)	15 (51.8) (0.6)	29 (100.0) (1.1)	
소재지별	시지역	257 (15.8) (10.1)	522 (32.2) (20.6)	844 (52.0) (33.3)	1623 (100.0) (64.1)	X^2=3.821 df=2 p=.148
	군지역	118 (13.0) (4.7)	305 (33.5) (12.0)	487 (53.5) (19.2)	910 (100.0) (35.9)	
총계		375 (14.8)	827 (32.6)	1331 (52.5)	2533 (100.0)	-

* p<.05, ** p<.01, *** p<.001

20. 교사대상 인권교육 실시 정도(교원)

우리 학교는 교사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표 Ⅱ-34>와 같음

▣ 전체적으로 교사대상 인권교육 실시 정도에 대해 교원은 “학기당 1회”(41.7%), “1년에 1회”(35.7%), “수시로”(15.5%), “한번도 없다”(7.1%) 순으로 나타남. **77.4%가 1년에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 교사대상 인권교육 실시 정도는 초등학교 “1년에 1회 이하”(41.2%), 중학교 “1년에 1회 이하 ”(38.8%), 고등학교 “1년에 1회 이하”(51.1%)로 나타남(X^2=48.115, p<.001).

<표Ⅱ-34> 교사대상 인권교육 실시 정도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한번도 없다.	1년에 1회	학기당 1회	수시로	계	
학교급별	초등학교	48 (5.2) (2.7)	334 (36.0) (18.6)	426 (45.9) (23.7)	121 (13.0) (6.7)	929 (100.0) (51.7)	X^2=48.115*** df=6 p=.000
	중학교 (공사립)	30 (6.4) (1.7)	151 (32.4) (8.4)	202 (43.3) (11.2)	83 (17.8) (4.6)	466 (100.0) (25.9)	
	고등학교 (공사립)	50 (12.4) (2.8)	156 (38.7) (8.7)	122 (30.3) (6.8)	75 (18.6) (4.2)	403 (100.0) (22.4)	
소재지별	시지역	84 (7.2) (4.7)	407 (34.7) (22.6)	497 (42.4) (27.6)	185 (15.8) (10.3)	1173 (100.0) (65.2)	X^2=1.359 df=3 p=.715
	군지역	44 (7.0) (2.4)	234 (37.4) (13.0)	253 (40.5) (14.1)	94 (15.0) (5.2)	625 (100.0) (34.8)	
재직연수	4년이하	29 (8.5) (1.6)	116 (34.0) (6.5)	123 (36.1) (6.8)	73 (21.4) (4.1)	341 (100.0) (19.0)	X^2=15.392 df=9 p=.081
	5년이상-9년이하	25 (7.6) (1.4)	117 (35.6) (6.5)	137 (41.6) (7.6)	50 (15.2) (2.8)	329 (100.0) (18.3)	
	10년이상-19년이하	33 (6.9) (1.8)	174 (36.3) (9.7)	210 (43.8) (11.7)	63 (13.1) (3.5)	480 (100.0) (26.7)	
	20년 이상	41 (6.3) (2.3)	234 (36.1) (13.0)	280 (43.2) (15.6)	93 (14.4) (5.2)	648 (100.0) (36.0)	
총계		128 (7.1)	641 (35.7)	750 (41.7)	279 (15.5)	1798 (100.0)	-

* p<.05, ** p<.01, *** p<.001

21. 교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요구(교원)

현행법에서는 교원에게 정당가입이나 정당후원, 공직선거 출마,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35>와 같음.

▣ 전체적으로 교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에 대해 교원은 “현행유지”(43.1%), “정당후원”(26.4%), “정당가입”(14.1%), “선거운동 허용”(10.3%), “공직선거 피선거권”(5.1%), “기타”(1.1%) 순으로 나타남. **교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의 현행유지 및 정당후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재직연수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 초등학교 “현행유지”(36.9%), “정당후원”(31.0%), 중학교 “현행유지”(53.2%), “정당후원”(20.2%), 고등학교 “현행유지”(45.7%), “정당후원”(22.8%)로 현행유지 및 정당후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X^2=44.304, p<.001).
- 재직연수별 : 교원의 재직연수별 4년이하 “현행유지”(49.6%), 5년이상-9년이하 “현행유지”(42.9%), 10년이상-19년이하 “현행유지”(37.5%), 20년 이상 “현행유지”(44.0%)로 나타남(X^2=46.072, p<.001). **재직연수에 관계없이 현행유지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Ⅱ-35> 교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요구

단위 : 명(%)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7">응답내용</th><th rowspan="2">유의도 검정</th></tr>
<tr><th>①</th><th>②</th><th>③</th><th>④</th><th>⑤</th><th>⑥</th><th>계</th></tr>
<tr><td rowspan="2">학교
급별</td><td>초등학교</td><td>343
(36.9)
(19.1)</td><td>142
(15.3)
(7.9)</td><td>288
(31.0)
(16.0)</td><td>47
(5.1)
(2.6)</td><td>98
(10.5)
(5.5)</td><td>11
(1.2)
(0.6)</td><td>929
(100.0)
(51.7)</td><td rowspan="2">X^2=44.304***
df=10
p=.000</td></tr>
<tr><td>중학교
(공사립)</td><td>248
(53.2)
(13.8)</td><td>57
(12.2)
(3.2)</td><td>94
(20.2)
(5.2)</td><td>24
(5.2)
(1.3)</td><td>37
(7.9)
(2.1)</td><td>6
(1.3)
(0.3)</td><td>466
(100.0)
(25.9)</td></tr>
</table>

	고등학교 (공사립)	184 (45.7) (10.2)	54 (13.4) (3.0)	92 (22.8) (5.1)	21 (5.2) (1.2)	50 (12.4) (2.8)	2 (0.5) (0.1)	403 (100.0) (22.4)	
소재 지별	시지역	503 (42.9) (28.0)	153 (13.0) (8.5)	308 (26.3) (17.1)	66 (5.6) (3.7)	132 (11.3) (7.3)	11 (0.9) (0.6)	1173 (100.0) (65.2)	X^2=7.799 df=5 p=.168
	군지역	272 (43.5) (15.1)	100 (16.0) (5.6)	166 (26.6) (9.2)	26 (4.2) (1.4)	53 (8.5) (2.9)	8 (1.3) (0.4)	625 (100.0) (34.8)	
재직 연수	4년이하	169 (49.6) (9.4)	43 (12.6) (2.4)	91 (26.7) (5.1)	10 (2.9) (0.6)	25 (7.3) (1.4)	3 (0.9) (0.2)	341 (100.0) (19.0)	X^2=46.072*** df=15 p=.000
	5년이상-9년이하	141 (42.9) (7.8)	39 (11.9) (2.2)	98 (29.8) (5.5)	22 (6.7) (1.2)	25 (7.6) (1.4)	4 (1.2) (0.2)	329 (100.0) (18.3)	
	10년이상-19년이하	180 (37.5) (10.0)	75 (15.6) (4.2)	150 (31.3) (8.3)	29 (6.0) (1.6)	43 (9.0) (2.4)	3 (0.6) (0.2)	480 (100.0) (26.7)	
	20년 이상	285 (44.0) (15.9)	96 (14.8) (5.3)	135 (20.8) (7.5)	31 (4.8) (1.7)	92 (14.2) (5.1)	9 (1.4) (0.5)	648 (100.0) (36.0)	
총계		775 (43.1)	253 (14.1)	474 (26.4)	92 (5.1)	185 (10.3)	19 (1.1)	1798 (100.0)	-

응답내용	①현행유지 ②정당가입 ③정당후원 ④공직선거 피선거권 ⑤선거운동 허용 ⑥기타

* p<.05, ** p<.01, *** p<.001

22.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들의 선거권 연령에 대한 요구(중고학생, 교원)

현행 우리나라 선거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선거권 연령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36>와 같음

▣ 전체적으로 선거권 연령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고등학생과 교원은 “현행 만 19세 유지”(46.0%), “만18세”(36.9%), “만17세”(7.8%), “만16세”(4.9%), “잘모르겠다”(4.4%) 순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대상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 : 중학생은 “현행 만19세 유지”(41.5%), 고등학생 “현행 만 19세 유지”(36.5%), 교원 “현행 만19세 유지”(50.6%)로 중고등학생 및 교원 모두 현행 만 19세 유지에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X^2=502.873, p<.001).

–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으나 빈도상으로 살펴보면 교원 전체의 선거권 연령에 대해 “현행 만 19세 유지”(50.6%), “만18세”(42.4%), “만 17세”(4.4%), “만16세”(2.7%) 순으로 나타남.

<표Ⅱ-36>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들의 선거권 연령에 대한 요구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현행 만19세 유지	만18세	만 17세	만 16세	잘모르겠다.	계	유의도 검정
대상별	중학생 (1-3학년)	186 (41.5) (6.4)	85 (19.0) (2.9)	43 (9.6) (1.5)	55 (12.3) (1.9)	79 (17.6) (2.7)	448 (100.0) (15.5)	X^2=502.873*** df=8 p=.000
	고등학생 (1-3학년)	237 (36.5) (8.2)	222 (34.2) (7.7)	104 (16.0) (3.6)	38 (5.8) (1.3)	49 (7.5) (1.7)	650 (100.0) (22.4)	
	교원 (초중고)	909 (50.6) (31.4)	762 (42.4) (26.3)	79 (4.4) (2.7)	48 (2.7) (1.7)	0 (0.0) (0.0)	1798 (100.0) (62.1)	
소재지별	시지역	830 (46.6) (28.7)	678 (38.0) (23.4)	140 (7.9) (4.8)	74 (4.2) (2.6)	61 (3.4) (2.1)	1783 (100.0) (61.6)	X^2=17.270** df=4 p=.002
	군지역	502 (45.1) (17.3)	391 (35.1) (13.5)	86 (7.7) (3.0)	67 (6.0) (2.3)	67 (6.0) (2.3)	1113 (100.0) (38.4)	
총계		1332 (46.0)	1069 (36.9)	226 (7.8)	141 (4.9)	128 (4.4)	2896 (100.0)	-

구분		응답내용: 현행 만19세 유지	만18세	만 17세	만 16세	잘모르겠다.	계	유의도 검정
근무급별	초등교사	468 (50.4) (26.0)	397 (42.7) (22.1)	41 (4.4) (2.3)	23 (2.5) (1.3)	0 (0.0) (0.0)	929 (100.0) (51.7)	X^2=3.413 df=6 p=.755
	중등교사 (공사립)	231 (49.6) (12.8)	202 (43.3) (11.2)	17 (3.6) (0.9)	16 (3.4) (0.9)	0 (0.0) (0.0)	466 (100.0) (25.9)	
	고등교사 (공사립)	210 (52.1) (11.7)	163 (40.4) (9.1)	21 (5.2) (1.2)	9 (2.2) (0.5)	0 (0.0) (0.0)	403 (100.0) (22.4)	
재직연수	4년이하	182 (53.4) (10.1)	132 (38.7) (7.3)	18 (5.3) (1.0)	9 (2.6) (0.5)	0 (0.0) (0.0)	341 (100.0) (19.0)	X^2=6.744 df=9 p=.664
	5년이상-9년이하	164 (49.8) (9.1)	140 (42.6) (7.8)	19 (5.8) (1.1)	6 (1.8) (0.3)	0 (0.0) (0.0)	329 (100.0) (18.3)	
	10년이상-19년이하	242 (50.4) (13.5)	206 (42.9) (11.5)	19 (4.0) (1.1)	13 (2.7) (0.7)	0 (0.0) (0.0)	480 (100.0) (26.7)	
	20년 이상	321 (49.5) (17.9)	284 (43.8) (15.8)	23 (3.5) (1.3)	20 (3.1) (1.1)	0 (0.0) (0.0)	648 (100.0) (36.0)	
총계		909 (50.6)	762 (42.4)	79 (4.4)	48 (2.7)	0 (0.0)	1798 (100.0)	-

* p<.05, ** p<.01, *** p<.001

제 5 절 학교와 가정에서 인권 침해 경험 분석

1. 학교에서 차별 받은 경험 정도(초중고학생)

나는 학교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37>와 같음.

▣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차별 받은 경험에 대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없다”(75.9%), “일년에 1−2회 정도”(14.4%), “한달에 1−2회 정도”(6.1%), “1주일에 1−2회 정도”(2.1%), “1주일에 3회 이상”(1.5%) 순으로 나타남.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의 차별을 받은 경험이 24.1%인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대상별,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 : 초등학생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18.2%), 중학생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27.9%), 고등학생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34.4%)으로 나타남(X^2=75.457, p<.001).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 초등4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13.7%), 초등5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20.3%), 초등6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21.3%), 중1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21.0%), 중2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32.9%), 중3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27.1%), 고1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33.7%), 고2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36.1%), 고3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20.6%)로 나타남(X^2=103.803, p<.001). 고2학년, 고1학년, 중2학년 순으로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 학교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표Ⅱ-37> 학교에서 차별 받은 경험 정도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없다.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계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1173 (81.8) (46.3)	164 (11.4) (6.5)	59 (4.1) (2.3)	22 (1.5) (0.9)	17 (1.2) (0.7)	1435 (100.0) (56.7)	X^2=75.457*** df=8 p=.000
	중학생 (1-3학년)	323 (72.1) (12.8)	65 (14.5) (2.6)	35 (7.8) (1.4)	14 (3.1) (0.6)	11 (2.5) (0.4)	448 (100.0) (17.7)	
	고등학생 (1-3학년)	426 (65.6) (16.8)	136 (20.9) (5.4)	60 (9.2) (2.4)	17 (2.6) (0.7)	11 (1.7) (0.4)	650 (100.0) (25.7)	
학년별	초등학교 (4학년)	438 (86.3) (17.3)	45 (8.9) (1.8)	14 (2.8) (0.6)	3 (0.6) (0.1)	7 (1.4) (0.3)	507 (100.0) (20.0)	X^2=103.803*** df=32 p=.000
	초등학교 (5학년)	425 (79.7) (16.8)	69 (12.9) (2.7)	22 (4.1) (0.9)	13 (2.4) (0.5)	5 (0.9) (0.2)	534 (100.0) (21.1)	
	초등학교 (6학년)	310 (78.7) (12.2)	50 (12.7) (2.0)	23 (5.8) (0.9)	6 (1.5) (0.2)	5 (1.3) (0.2)	394 (100.0) (15.6)	
	중학교 (1학년)	102 (79.0) (4.0)	13 (10.1) (0.5)	7 (5.4) (0.3)	5 (3.9) (0.2)	2 (1.6) (0.1)	129 (100.0) (5.1)	
	중학교 (2학년)	135 (67.1) (5.3)	33 (16.4) (1.3)	20 (10.0) (0.8)	7 (3.5) (0.3)	6 (3.0) (0.2)	201 (100.0) (7.9)	
	중학교 (3학년)	86 (72.9) (3.4)	19 (16.1) (0.8)	8 (6.8) (0.3)	2 (1.7) (0.1)	3 (2.5) (0.1)	118 (100.0) (4.7)	
	고등학교 (1학년)	168 (66.3) (6.6)	51 (20.2) (2.0)	23 (9.1) (0.9)	7 (2.8) (0.3)	4 (1.6) (0.2)	253 (100.0) (10.0)	
	고등학교 (2학년)	235 (63.9) (9.3)	81 (22.0) (3.2)	36 (9.8) (1.4)	9 (2.4) (0.4)	7 (1.9) (0.3)	368 (100.0) (14.5)	
	고등학생 (3학년)	23 (79.4) (0.9)	4 (13.8) (0.2)	1 (3.4) (0.0)	1 (3.4) (0.0)	0 (0.0) (0.0)	29 (100.0) (1.1)	
소재지별	시지역	1237 (76.2) (48.8)	224 (13.8) (8.8)	103 (6.3) (4.1)	36 (2.2) (1.4)	23 (1.4) (0.9)	1623 (100.0) (64.1)	X^2=2.538 df=4 p=.638
	군지역	685 (75.3) (27.0)	141 (15.5) (5.6)	51 (5.6) (2.0)	17 (1.9) (0.7)	16 (1.8) (0.6)	910 (100.0) (35.9)	
총계		1922 (75.9)	365 (14.4)	154 (6.1)	53 (2.1)	39 (1.5)	2533 (100.0)	-

* p<.05, ** p<.01, *** p<.001

2.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 정도(초중고학생)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38>와 같음.

▣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체벌 받은 경험 정도에 대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없다”(80.1%), “일년에 1-2회 정도”(11.9%), “한달에 1-2회 정도”(4.5%), “1주일에 1-2회 정도”(2.0%), “1주일에 3회 이상”(1.5%) 순으로 나타남.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의 체벌을 받은 경험이 19.9%인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대상별,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 : **초등학생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16.6%), 중학생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41.1%), 고등학생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34.6%)으로 나타남(X^2=141.353, $p<.001$).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의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 초등4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11.5%), 초등5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12.6%), 초등6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16.5%), 중1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44.2%), 중2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35.9%), 중3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30.5%), 고1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17.5%), 고2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26.3%), 고3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24.1%)로 나타남(X^2=182.764, $p<.001$). 중1학년, 중2학년, 중3학년, 고2학년, 고3학년 순으로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표Ⅱ-38>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 정도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없다.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계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1245 (86.8) (49.2)	118 (8.2) (4.7)	42 (2.9) (1.7)	15 (1.0) (0.6)	15 (1.0) (0.6)	1435 (100.0) (56.7)	X^2=141.353*** df=8 p=.000

	중학생 (1-3학년)	283 (63.2) (11.2)	98 (21.9) (3.9)	38 (8.5) (1.5)	23 (5.1) (0.9)	6 (1.3) (0.2)	448 (100.0) (17.7)	
	고등학생 (1-3학년)	502 (77.2) (19.8)	85 (13.1) (3.4)	33 (5.1) (1.3)	12 (1.8) (0.5)	18 (2.8) (0.7)	650 (100.0) (25.7)	
학년별	초등학교 (4학년)	449 (88.5) (17.7)	41 (8.1) (1.6)	9 (1.8) (0.4)	4 (0.8) (0.2)	4 (0.8) (0.2)	507 (100.0) (20.0)	X^2=182.764*** df=32 p=.000
	초등학교 (5학년)	467 (87.4) (18.4)	42 (7.9) (1.7)	15 (2.8) (0.6)	7 (1.3) (0.3)	3 (0.6) (0.1)	534 (100.0) (21.1)	
	초등학교 (6학년)	329 (83.5) (13.0)	35 (8.9) (1.4)	18 (4.6) (0.7)	4 (1.0) (0.2)	8 (2.0) (0.3)	394 (100.0) (15.6)	
	중학교 (1학년)	72 (55.8) (2.8)	31 (24.0) (1.2)	16 (12.4) (0.6)	9 (7.0) (0.4)	1 (0.8) (0.0)	129 (100.0) (5.1)	
	중학교 (2학년)	129 (64.1) (5.1)	44 (21.9) (1.7)	16 (8.0) (0.6)	10 (5.0) (0.4)	2 (1.0) (0.1)	201 (100.0) (7.9)	
	중학교 (3학년)	82 (69.5) (3.2)	23 (19.5) (0.9)	6 (5.1) (0.2)	4 (3.4) (0.2)	3 (2.5) (0.1)	118 (100.0) (4.7)	
	고등학교 (1학년)	209 (82.5) (8.3)	27 (10.7) (1.1)	6 (2.4) (0.2)	6 (2.4) (0.2)	5 (2.0) (0.2)	253 (100.0) (10.0)	
	고등학교 (2학년)	271 (73.7) (10.7)	52 (14.1) (2.1)	26 (7.1) (1.0)	6 (1.6) (0.2)	13 (3.5) (0.5)	368 (100.0) (14.5)	
	고등학생 (3학년)	22 (75.9) (0.9)	6 (20.7) (0.2)	1 (3.4) (0.0)	0 (0.0) (0.0)	0 (0.0) (0.0)	29 (100.0) (1.1)	
소재지별	시지역	1302 (80.2) (51.4)	184 (11.3) (7.3)	85 (5.2) (3.4)	31 (1.9) (1.2)	21 (1.3) (0.8)	1623 (100.0) (64.1)	X^2=9.103 df=4 p=.059
	군지역	728 (80.0) (28.7)	117 (12.9) (4.6)	28 (3.1) (1.1)	19 (2.1) (0.8)	18 (2.0) (0.7)	910 (100.0) (35.9)	
총계		2030 (80.1)	301 (11.9)	113 (4.5)	50 (2.0)	39 (1.5)	2533 (100.0)	-

* p<.05, ** p<.01, *** p<.001

3.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초중고학생)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39>와 같음.

▣ 전체적으로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에 대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없다"(74.4%), "일년에 1-2회 정도"(14.2%), "한달에 1-2회 정도"(6.2%), "1주일에 1-2회 정도"(3.1%), "1주일에 3회 이상"(2.1%) 순으로 나타남. **교사로부터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의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이 25.6%인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대상별, 학년별, 소재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 : 초등학생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16.6%), 중학생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41.1%), 고등학생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34.6%)으로 나타남(X^2=158.908, p<.001).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교사로부터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의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 초등4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15.5%), 초등5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16.3%), 초등6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18.6%), 중1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35.0%), 중2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45.8%), 중3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39.7%), 고1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33.3%), 고2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36.7%), 고3학년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20.6%)로 나타남(X^2=201.591, p<.001). 중2학년, 중3학년, 고2학년, 중1학년, 고1학년 순으로 학교에서 목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표Ⅱ-39>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 정도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없다.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계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1197 (83.4) (47.3)	141 (9.8) (5.6)	46 (3.2) (1.8)	30 (2.1) (1.2)	21 (1.5) (0.8)	1435 (100.0) (56.7)	$X^2=158.908^{***}$ df=8 p=.000
	중학생 (1-3학년)	264 (58.9) (10.4)	88 (19.6) (3.5)	54 (12.1) (2.1)	28 (6.3) (1.1)	14 (3.1) (0.6)	448 (100.0) (17.7)	
	고등학생 (1-3학년)	425 (65.4) (16.8)	131 (20.2) (5.2)	56 (8.6) (2.2)	21 (3.2) (0.8)	17 (2.6) (0.7)	650 (100.0) (25.7)	
학년별	초등학교 (4학년)	429 (84.5) (16.9)	42 (8.3) (1.7)	16 (3.2) (0.6)	13 (2.6) (0.5)	7 (1.4) (0.3)	507 (100.0) (20.0)	$X^2=201.591^{***}$ df=32 p=.000
	초등학교 (5학년)	447 (83.7) (17.6)	58 (10.9) (2.3)	14 (2.6) (0.6)	10 (1.9) (0.4)	5 (0.9) (0.2)	534 (100.0) (21.1)	
	초등학교 (6학년)	321 (81.4) (12.7)	41 (10.4) (1.6)	16 (4.1) (0.6)	7 (1.8) (0.3)	9 (2.3) (0.4)	394 (100.0) (15.6)	
	중학교 (1학년)	84 (65.0) (3.3)	21 (16.3) (0.8)	10 (7.8) (0.4)	9 (7.0) (0.4)	5 (3.9) (0.2)	129 (100.0) (5.1)	
	중학교 (2학년)	109 (54.2) (4.3)	39 (19.4) (1.5)	37 (18.4) (1.5)	12 (6.0) (0.5)	4 (2.0) (0.2)	201 (100.0) (7.9)	
	중학교 (3학년)	71 (60.3) (2.8)	28 (23.7) (1.1)	7 (5.9) (0.3)	7 (5.9) (0.3)	5 (4.2) (0.2)	118 (100.0) (4.7)	
	고등학교 (1학년)	169 (66.7) (6.7)	49 (19.4) (1.9)	20 (7.9) (0.8)	10 (4.0) (0.4)	5 (2.0) (0.2)	253 (100.0) (10.0)	
	고등학교 (2학년)	233 (63.3) (9.2)	77 (20.9) (3.0)	35 (9.5) (1.4)	11 (3.0) (0.4)	12 (3.3) (0.5)	368 (100.0) (14.5)	
	고등학생 (3학년)	23 (79.4) (0.9)	5 (17.2) (0.2)	1 (3.4) (0.0)	0 (0.0) (0.0)	0 (0.0) (0.0)	29 (100.0) (1.1)	
소재지별	시지역	1232 (75.9) (48.6)	207 (12.8) (8.2)	104 (6.4) (4.1)	46 (2.8) (1.8)	34 (2.1) (1.3)	1623 (100.0) (64.1)	$X^2=9.705^{*}$ df=4 p=.046
	군지역	654 (71.9) (25.8)	153 (16.8) (6.0)	52 (5.7) (2.1)	33 (3.6) (1.3)	18 (2.0) (0.7)	910 (100.0) (35.9)	
총계		1886 (74.4)	360 (14.2)	156 (6.2)	79 (3.1)	52 (2.1)	2533 (100.0)	-

* $p<.05$, ** $p<.01$, *** $p<.001$

4.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 정도(초중고학생)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Ⅱ-40>와 같음.

▣ 전체적으로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에 대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없다”(83.2%), “일년에 1-2회 정도”(11.0%), “한달에 1-2회 정도”(3.8%), “1주일에 1-2회 정도”(0.9%), “1주일에 3회 이상”(1.1%) 로 나타남.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의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16.8%인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대상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 :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에 대해 초등학생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17.9%), 중학생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15.8%), 고등학생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14.8%)으로 나타남(X^2=20.359, p<.001).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의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Ⅱ-40>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 정도

단위 : 명(%)

구분		응답내용						유의도 검정
		없다.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계	
대상별	초등학생 (4-6학년)	1179 (82.1) (46.5)	153 (10.7) (6.0)	64 (4.5) (2.5)	15 (1.0) (0.6)	24 (1.7) (0.9)	1435 (100.0) (56.7)	X^2=20.359** df=8 p=.009
	중학생 (1-3학년)	377 (84.2) (14.9)	56 (12.5) (2.2)	14 (3.1) (0.6)	1 (0.2) (0.0)	0 (0.0) (0.0)	448 (100.0) (17.7)	
	고등학생 (1-3학년)	554 (85.2) (21.9)	69 (10.6) (2.7)	18 (2.8) (0.7)	6 (0.9) (0.2)	3 (0.5) (0.1)	650 (100.0) (25.7)	
학년별	초등학교 (4학년)	434 (85.6) (17.1)	43 (8.5) (1.7)	15 (3.0) (0.6)	7 (1.4) (0.3)	8 (1.6) (0.3)	507 (100.0) (20.0)	X^2=43.208 df=32 p=.089
	초등학교 (5학년)	430 (80.5) (17.0)	66 (12.4) (2.6)	23 (4.3) (0.9)	4 (0.7) (0.2)	11 (2.1) (0.4)	534 (100.0) (21.1)	
	초등학교	315	44	26	4	5	394	

	(6학년)	(79.9) (12.4)	(11.2) (1.7)	(6.6) (1.0)	(1.0) (0.2)	(1.3) (0.2)	(100.0) (15.6)	
	중학교 (1학년)	110 (85.3) (4.3)	15 (11.6) (0.6)	4 (3.1) (0.2)	0 (0.0) (0.0)	0 (0.0) (0.0)	129 (100.0) (5.1)	
	중학교 (2학년)	164 (81.6) (6.5)	31 (15.4) (1.2)	6 (3.0) (0.2)	0 (0.0) (0.0)	0 (0.0) (0.0)	201 (100.0) (7.9)	
	중학교 (3학년)	103 (87.3) (4.1)	10 (8.5) (0.4)	4 (3.4) (0.2)	1 (0.8) (0.0)	0 (0.0) (0.0)	118 (100.0) (4.7)	
	고등학교 (1학년)	215 (85.0) (8.5)	31 (12.3) (1.2)	5 (2.0) (0.2)	2 (0.8) (0.1)	0 (0.0) (0.0)	253 (100.0) (10.0)	
	고등학교 (2학년)	314 (85.3) (12.4)	35 (9.5) (1.4)	12 (3.3) (0.5)	4 (1.1) (0.2)	3 (0.8) (0.1)	368 (100.0) (14.5)	
	고등학생 (3학년)	25 (86.2) (1.0)	3 (10.3) (0.1)	1 (3.4) (0.0)	0 (0.0) (0.0)	0 (0.0) (0.0)	29 (100.0) (1.1)	
소재 지별	시지역	1342 (82.7) (53.0)	183 (11.3) (7.2)	70 (4.3) (2.8)	13 (0.8) (0.5)	15 (0.9) (0.6)	1623 (100.0) (64.1)	X^2=4.925 df=4 p=.295
	군지역	768 (84.4) (30.3)	95 (10.4) (3.8)	26 (2.9) (1.0)	9 (1.0) (0.4)	12 (1.3) (0.5)	910 (100.0) (35.9)	
총계		2110 (83.2)	278 (11.0)	96 (3.8)	22 (0.9)	27 (1.1)	2533 (100.0)	-

* p<.05, ** p<.01, *** p<.001

제 3 장
요약 및 결론

제 3 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이후 실제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책들은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전라북도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공존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제시

2. 연구의 목적

- 전라북도 인권실천 계획 및 인권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확보
- 학생인권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 검토하여 발전적 정책 방향 제시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전북 학생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문항 개발
- 학생 인권 실태에 대한 교육 주체별·영역별 조사 및 분석
-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정책 수립 방안 제시

4. 연구의 방법

- 문헌 연구 : 2015 학생인권실태조사 설문문항 개발보고서 및 서울, 경기, 충남, 대전교육청의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함.
- 전문가 자문 : 연구의 방향 및 조사 방법 개발, 조사의 수행, 결과 분석의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함.

5. 학생인권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

- 조사 대상 및 표집 :

  전라북도 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 전수조사

- 조사 대상 응답자 현황

대상자별	초등학교 학생	1435	33.1%	
	중학교 학생	448	10.3%	
	고등학교 학생	650	15.0%	
	교원	1798	41.5%	
	총계	4331	100%	
	초등학교 교원	929	51.7%	
	공사립중학교 교원	466	25.9%	
	공사립고등학교교원	403	22.4%	
	총계	1798	100%	

- 조사 도구

실태 분야	문항수		
	초	중고	교원
· 학생인권보장 제도에 대한 일반적 요구	3	3	3
· 학교인권에 대한 일반적 요구	7	9	8
· 인권관련 학교생활에 대한 요구	14	19	11
· 인권관련 학교와 가정에서 경험한 현황	4	4	2
·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2	3	3
총 문항수	30	38	27

가. 학생인권보장 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 분석 결과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과 교원의 인식 정도는 “일부내용을 알고 있다”(32.3%), “처음들어본다”(25.3%), ”잘 알고 있다“(21.8%), ”이름만 알고 있다“(20.7%) 순으로 나타남. 2013년 7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5년이 경과된 것에 비해 이해의 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남.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학생과 교원은 “그렇다”(79.5%), “그렇지 않다”(20.5%) 순으로 나타남. 79.5%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해 학생과 교원은 “알고 있다.”(56.4%), “모른다”(43.6%) 순으로 나타남.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에 대해 43.6%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학생인권에 대한 일반적 실태 분석 결과

▣ 학교운영에 대한 교원들의 참여 정도는 “그렇다.”(50.3%), “매우 그렇다”(38.9%), “그렇지 않다”(9.7%), “전혀 그렇지 않다”(1.2%) 순으로 나타남. **88.9% 교원들이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가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에 대해 초중고 학생은 “그렇다.”(58.1%), “매우 그렇다”(27.3%), “그렇지 않다”(10.7%), “전혀 그렇지 않다”(3.9%) 순으로 나타남. **85.4%가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에서 인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대해 학생과 교원은 “그렇다.”(47.0%), “매우 그렇다”(26.1%), “그렇지 않다”(18.9%), “전혀 그렇지 않다”(8.0%) 순으로 나타남.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들은 73.1%가 인권을 보호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생의 잘못에 대한 교사의 체벌 가능 정도에 대해 학생과 교원은 “그렇다.”(34.4%), “그렇지 않다”(33.1%), “전혀 그렇지 않다”(23.4%), “매우 그렇다”(9.1%) 순으로 나타남. **학생의 잘못에 대한 교사의 체벌 가능 정도에 대해 43.5%가 체벌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권에 대한 감수성의 높은 정도에 대해 중고등학생과 교원은 “그렇다.”(66.6%), “매우 그렇다”(22.0%), “그렇지 않다”(10.0%), “전혀 그렇지 않다”(1.4%) 순으로 나타남. **중고등학생과 교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88.6%로 높게 나타남.**

▣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을 규제해야 하는 정도에 대해 초중고등학생과 교원은 “그렇지 않다”(37.7%), “그렇다”(30.0%), “전혀 그렇지 않다”(25.0%), “매우 그렇다”(7.3%) 순으로 나타남. 학생 62.7%가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를 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으로 나타남.

▣ 수업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어야하는 정도에 대해 초중고등학생과 교원은 “그렇다”(33.2%), “그렇지 않다”(29.3%), “매우 그렇다”(20.6%), “전혀 그렇지 않다”(16.9%) 순으로 나타남. 53.8%가 수업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어야하는 한다고 나타남.

▣ 학생의 의사결정시 교사나 부모님의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해 초중고등학생과 교원은 “그렇지 않다”(44.7%), “그렇다”(33.9%), “전혀 그렇지 않다”(12.5%), “매우 그렇다”(8.8%) 순으로 나타남. 학생의 의사결정시 57.2%가 교사나 부모님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높게 나타남.

▣ 성적 반영한 학교생활에 대한 보상 정도에 대해 초중고등학생은 “전혀 그렇지 않다”(52.8%), “그렇지 않다”(22.1%), “그렇다”(18.4%), “매우 그렇다”(6.7%) 순으로 나타남. 74.9%가 성적을 반영한 학교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나타남.

▣ 학생의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 정도에 대해 중고등 학생과 교원은 “그렇다”(62.5%), “매우 그렇다”(29.1%), “그렇지 않다” (6.8%), “전혀 그렇지 않다”(1.5%%) 순으로 나타남. 학생은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를 91.6%가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다. 인권관련 학교생활에 대한 요구 분석 결과

▣ 학생지도방법으로 반성문이나 각서의 강요 여부에 대해 초중고학생과 교원은 “아니다”(83.9%), “그렇다”(16.1%) 순으로 나타남. 초중고학생 및 교원은 83.9%가 학생지도방법으로 반성문이나 각서의 강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흡연이나 도난사고를 이유로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는지에 대해 초중고학생과 교원은 “아니다”(94.5%), “그렇다”(5.5%) 순으로 나타남. <u>초중고학생 및 교원은 94.5%가 흡연이나 도난사고로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u>

▣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조건의 유무에 대해 초중고학생과 교원은 “아니다”(76.5%), “그렇다”(23.5%) 순으로 나타남. <u>초중고학생 및 교원 23.5%가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u>.

▣ 학생들 주도의 학교 행사 계획 진행 여부에 대해 초중고학생과 교원은 “그렇다”(53.4%), “아니다”(46.6%) 순으로 나타남. <u>초중고학생 및 교원은 46.6%가 학생들 주도의 학교 행사 계획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u>

▣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 여부에 대해 초중고학생과 교원은 “아니다”(67.9%), “그렇다”(32.1%) 순으로 나타남. <u>초중고학생 및 교원 32.1%가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을 규제하고 있다고 응답함.</u>

▣ 학교내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는 여부에 대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은 “아니다”(53.4%), “그렇다”(46.6%) 순으로 나타남. <u>초중고학생 및 교원 46.6%가 학교내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는 것으로 나타남.</u>

▣ 학생들의 성적으로 차별 여부에 대해 초중고학생은 “아니다”(83.5%), “아니다”(16.5%) 순으로 나타남. <u>초중고학생은 16.5%가 학생들의 성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u>

▣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지에 대해 교원들은 “아니다”(95.3%), “그렇다”(4.7%) 순으로 나타남. <u>4.7%의 교원이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u>

▣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 운영 여부에 대해 초중고학생과 교원은 “아니다”(61.3%), “그렇다”(38.7%) 순으로 나타남. 초중고학생 및 교원 61.3%가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 초중고학생과 교원은 “그렇다”(74.3%), “아니다”(25.7%) 순으로 나타남. 초중고학생 및 교원 25.7%가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강제 운영 여부에 대해 초중고학생은 “아니다”(81.8%), “그렇다”(18.2%) 순으로 나타남. 초중고학생 18.2%가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 학교게시판이나 누리집(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의견을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초중고학생은 “그렇다”(80.7%), “아니다”(19.3%) 순으로 나타남. 초중고학생 19.2%가 학교게시판이나 누리집에 자유롭게 의견을 쓸 수 없다고 응답함.

▣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초중고학생은 “그렇다”(56.6%), “아니다”(43.4%) 순으로 나타남. 초중고학생 43.4%가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언제든지 학교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초중고학생은 “그렇다”(81.6%), “아니다”(18.4%) 순으로 나타남. 초중고학생 18.4%가 언제든지 학교 보건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응답함.

▣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대해 “아니다”(81.1%), “그렇다”(18.9%) 순으로 나타남. 중고등학생 18.9%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부당한 대우 경험 여부에 대해 “아니다”(63.9%), “그렇다”(36.1%) 순으로 나타남. 중고등학생 36.1%가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부당한 대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부당한 대우의 경험 유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36.0%), “최저임금(2017년도 기준시급:6,470원) 미만”(32.0%), “약속한 급여 미지급”(10.7%), “일방적인 해고”(9.3%), “정해진 근무시간 위반”(5.3%), “인권침해(성폭력, 욕설, 폭력, 차별 등)”(4.0%),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2.7%)순으로 나타남. 중고등학생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 가장 높게 부당한 대우 경험으로 나타남.

▣ 노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중고등학생과 교원은 “그렇다”(50.8%), “아니다”(49.2%) 순으로 나타남. 노동 부당 대우에 대한 도움 요청 기관에 대해 49.2%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생대상 인권교육 실시 정도 대해 초중고등학생은 “학기마다 2시간 이상”(52.5%), “1년에 1시간”(32.6%), “한번도 없다”(14.8%) 순으로 나타남. 1년에 1시간 이하 학생대상 인권교육을 실시가 47.4%인 것으로 나타남.

▣ 교사대상 인권교육 실시 정도에 대해 교원은 “학기당 1회”(41.7%), “1년에 1회”(35.7%), “수시로”(15.5%), “한번도 없다”(7.1%) 순으로 나타남. 77.4%가 1년에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함.

▣ 교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에 대해 교원은 “현행유지”(43.1%), “정당후원”(26.4%), “정당가입”(14.1%), “선거운동 허용”(10.3%), “공직 선거 피선거권”(5.1%), “기타”(1.1%) 순으로 나타남. 교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의 현행유지 및 정당후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선거권 연령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고등학생과 교원은 “현행 만 19세

유지”(46.0%), “만18세”(36.9%), “만17세”(7.8%), “만16세”(4.9%), “잘 모르겠다”(4.4%) 순으로 나타남.

라. 학교와 가정에서 인권 침해 경험 분석 결과

▣ 학교에서 차별 받은 경험에 대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없다”(75.9%), “일년에 1-2회 정도”(14.4%), “한달에 1-2회 정도”(6.1%), “1주일에 1-2회 정도”(2.1%), “1주일에 3회 이상”(1.5%) 순으로 나타남.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의 차별을 받은 경험이 24.1%인 것으로 나타남.**

▣ 학교에서 체벌 받은 경험 정도에 대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없다”(80.1%), “일년에 1-2회 정도”(11.9%), “한달에 1-2회 정도”(4.5%), “1주일에 1-2회 정도”(2.0%), “1주일에 3회 이상”(1.5%) 순으로 나타남.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의 체벌을 받은 경험이 19.9%인 것으로 나타남.

▣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에 대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없다”(74.4%), “일년에 1-2회 정도”(14.2%), “한달에 1-2회 정도”(6.2%), “1주일에 1-2회 정도”(3.1%), “1주일에 3회 이상”(2.1%) 순으로 나타남. **교사로부터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의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이 25.6%인 것으로 나타남.**

▣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에 대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없다”(83.2%), “일년에 1-2회 정도”(11.0%), “한달에 1-2회 정도”(3.8%), “1주일에 1-2회 정도”(0.9%), “1주일에 3회 이상”(1.1%) 로 나타남.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의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16.8%인 것으로 나타남.**

제2절 정책적 방안

1. 학생인권보장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정책

가.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연수 홍보 체계 구축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5년이 경과되어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연수 홍보할 필요가 있음.

나. 학교현장과 소통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사업이 학교현장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이 수립 실행되어야 함. 또한 전라북도 교육공동체에게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다양한 방안 온오프라인 홍보체제가 마련되어야 함.

2. 학생인권의 확장과 보장을 위한 학교정책

가. 학교자율참여 및 학생의견을 반영한 자치학교 활성화

민주시민으로서 참여와 합의는 학교운영 과정에서 자율적 문화를 조성하는 기본 토대가 됨. 따라서 학교운영에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학교정책에 대해 학생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여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자치학교로서 학교 구성원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가 있는 학교문화 풍토를 조성해야함.

나. 폭력과 차별이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에서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의 잘못에 대해 교사의 체벌은 없어야 하며,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회복적 생활교육 및 인권감수성 훈련 교육이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

다. 개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학생 62.7%의 의견에 비추어 학생들의 개성과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생활 인권규약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사생활권 보호차원에서 수업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은 교육공동체의 공동 토론회 등을 통해 상호간 규약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학교자치문화가 조성되도록 해야 함.

라. 차별이 없는 학교문화 풍토 조성

학생은 학교생활 중에 성적을 반영한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하며 학생의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문화가 조성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문화를 구축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수직적인 학교조직에서 수평적인 학교구조로 재구조화해야 함.

3. 교육공동체의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방안

가. 학생인권존중의 다양한 활동 지원체제 구축

학교는 학생들에게 반성문이나 각서의 강요를 제거하고 흡연이나 도난사고를 이유로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음. 또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조건을 두지 않으며, 학생주도의 학교행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율참여 여건을 마련하고 학생활동관련 사업에 관련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학생 참여를 보장함. 학생자치회가 주도하여 학교사업이 기획 및 추진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 활동실을 제공하고 학생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받는 학교소통체제를 마련.

나. 교육공동체의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 금지, 학교 내 학생의 휴대전화 걷지 않기, 학생들을 성적으로 차별하지 않기, 학생들의 성적 공개하지 않기,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강제 운영 금지,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 학교게시판이나 누리집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교육공동체의 인권옹호를 위

한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적용.

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행사 운영

초, 중, 고등학생 및 교원 61.3%가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학생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학생인권의 날을 기획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인권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학생인권의 날에 대한 홍보 및 체계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연수, 자료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라. 학생의 건강권증진을 위한 정책 운영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 언제든지 학교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며 증진할 수 있는 건강권 보장 방안 마련

마.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법, 최저임금(2017년도 기준시급 : 6,470원) 및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이해, 해고 및 근무시간과 관련된 노동법, 성폭력 및 욕설, 차별 등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 부당한 대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인지 등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노동인권교육 매뉴얼개발, 노동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노동인권교육 시간 확보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바. 인권 옹호자로서의 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

학생대상 인권교육 실시, 학기마다 2시간 이상 인권교육 실시, 전라북도형 인권교재개발, 교사대상 인권교육 실시, 교사 학기당 1회 이상 인권교육실시, 온라인 인권교육콘텐츠 개발 운영, 정기적인 인권교육 직무연수 개설 운영, 인권교육 교사-학생 동아리 운영, 인권관련 교과연구회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등 인권 옹호자로서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체제를 구축해야 함.

사.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및 학생 선거권 확대

교원들의 정치 기본권 보장과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함. 정당 후원이나 선거 운동 허용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중, 고등학생들의 만18세 선거권 확보를 위한 학생모의 선거, 학생이 주도하는 자치단체장 모의 선거 등 다양한 자치활동의 여건을 마련하여 적절하게 제공함.

4. 유기적인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가. 인권옹호 및 구제활동 강화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한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옹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인권 상담 창구가 필요하며, 교사의 인권보장 및 교권을 존중하고 더불어 학생들의 인권이 옹호될 수 있는 교육공동체 협력체제가 마련되어야 함. 회복적 관계 조성으로 교육공동체가 서로 돌보며 상생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회복적 갈등조정기구 마련이 되어야 함.

나. 인권정책 질관리 및 역량 강화

현장에서의 인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체벌,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우에 대해 학교 및 교육청에서의 관리 향상을 위한 점검회의나 학생인권영향평가와 같은 체계적인 정책환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학생인권옹호관 활동, 인권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상벌점제 대안 마련,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 개정, 전라북도 학생인권 지표 개발 적용 등 인권정책 질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인권교육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제3절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전라북도 학생인권과 교권을 존중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를 위한 인권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타당성과 신뢰도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기연구된 2015 전라북도 학생인권실태조사 설문문항 개발보고서 및 서울, 경기, 충남, 대전교육청 등의 타시도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설문문항을 개발한 후, 전라북도 인권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최종 초등학생 30문항, 중고등학생 38문항, 교원 27문항을 확정하였다. 이후, 온라인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응답자는 초, 중, 고등학생 4,331명 교원 1,798명으로 배경변인에 따른 문항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인권보장 제도에 대한 이해정도 분석 결과, 학생과 교원 46%이상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잘 모르고 있었으며, 20.5%가 아직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학생 및 교원이 43.6%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안내 방법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인권에 대한 일반적 실태 분석 결과, 88.9% 교원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한다고 응답하고 85.4%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들은 73.1%가 인권을 보호 받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아 비교적 높게 응답하였지만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과 교원의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학생의 잘못에 대한 교사의 체벌 가능 정도에 대해 체벌을 찬성한다고 응답한 43.5% 교사의 인식적 전환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중고등학생과

교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비교적 88.6%로 높게 나왔으나 향후 지속발전 가능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 및 교원은 62.7%가 두발 및 용의 복장 규제를 하지 않아야 하며, 수업 중 휴대전화를 46.2%가 걷지 말아야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생활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과 교사들은 학생의 의사결정시에 57.2%가 교사나 학부모님의 의견보다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서 성적에 따른 보상을 74.9%가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제시를 91.6%가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사회정치적인 식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이나 수업방법이 개발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인권관련 학교생활에 대한 요구 분석 결과, 초중고 학생 및 교원은 83.9%가 학생지도방법으로 반성문이나 각서를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4.5%가 흡연이나 도난사고를 이유로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23.5%가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조건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학생활동 제안규제를 개정해야하며, 학생들이 46.6%가 학생주도의 학교행사 계획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향후 학생회 주관의 학교행사 계획 수립 및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여건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초중고학생 및 교원 32.1%가 학생의 두발 및 용의 복장을 규제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6.6%가 학교 내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 학생 16.5%가 성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다소 적으나 4.7%의 교원이 아직도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권을 증진한다는 관점에서 학생들의 생활에 자율과 책무성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학교인권생활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초중고학생 및 교원 25.7%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학교정책 사업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

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 제시, 학교토론회 및 교직원 회의 학생 참여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특히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에 대해 61.3%가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학생인권의 날 행사 또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계획되고 수행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을 18.2%의 학생들이 강제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학교게시판이나 누리집에 19.2%의 학생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앞으로 학생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적 환경을 대폭 개선해야할 것이다. 또한 생리로 인한 결석을 초중고학생 43.4%가 공결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4%가 언제든 학교 보건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생리공결 및 학교 보건실 이용에 대한 확대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고등학생 18.9%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학생중 36.1%가 부당한 대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당한 대우 경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36.0%), “최저임금(2017년도 기준시북:6,470원)미만”(32.0%), “약속한 급여 미지급”(10.7%), “일방적 해고”(9.3%), “정해진 근무시간 위반”(5.3%), “인권침해(성폭력, 욕설, 폭력, 차별 등)”(4.0%),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2.7%)로 중고등학생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 임금에 대한 노동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노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49.2%가 도움 요청 기관에 대해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및 연수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대상 인권교육은 1년에 1시간 이하가 47.4% 실시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학생대상 인권교육 시간의 확보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대상 인권교육도 77.4%가 1년에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인권교육은 학기별 1-2회 이상 이루어져 학교내외에서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이 체화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교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의 정당후원에 대한 욕구가 26.4%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향후 교원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적 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 하며 학생들의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되어야 한다고 36.9%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다양한 참여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학교와 가정에서 인권 침해 경험 분석 결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일 년에 1-2회 정도 이상의 차별을 받은 경험이 24.1%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의 체벌을 받은 경험도 19.9%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사로부터 일년에 1-2회 정도 이상의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이 25.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자로부터 일 년에 1-2회 정도 이상의 체벌을 받은 경험도 16.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인권옹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제 언

전라북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2015년에 이어 2번째이다. 학생인권실태조사는 2013년에 제정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의 인권감수성을 어느 정도 증진시켰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중장기적인 인권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라북도 학생인권실태 종단비교 연구 체제 마련

2015년, 2017년 전라북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2015년도에 연구된 문항개발 개발연구보고서를 근간으로 타시도의 학생인권실태 문항을 비교하여 정리한 후,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정책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학생의 노동인권실태를 알아보고자 기존의 문항에 추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현황에 따른 필요한 문항을 추가하여 설문을 할 수 있으나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문항을 개발하여 중장기적인 학생인권의 변화실태를 종단비교 연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하고 실제로 종단연구를 통해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이 증진되는데 있어 어떤 요인들이 기여를

했는지 더욱 보완되어야할 정책들은 무엇인지를 밝혀 현장의 인권감수성을 증진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연구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인권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 마련

학생인권교육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교육은 1-2번의 교육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체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적 지원 및 활동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초중고, 교원 대상 학생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학생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학생인권감수성 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학생인권교육콘텐츠 개발 보급, 학생인권캠프 실시, 학생인권교육매뉴얼 개발 보급, 학생인권홍보 팸플릿 제작 보급, 교원대상 인권관련 직무연수 개설, 인권관련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인권관련 학생동아리 운영, 인권교육교원동아리 운영, 학교인권교과연구회 공모 운영, 학생인권상담사례집 발간 보급, 지역 인권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한 행사 추진, 학생인권보장캠페인, 전교생 학생권리찾기 캠페인 활동, 학생자치회 활성화,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한 인권구제활동 적극 지원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학생과 교원들의 상호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인식적인 변화와 더불어 몸으로 익혀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녹여내는 작업들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학생인권교육은 한 학기에 1번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일상 생활속에서 상호 존중하여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작용하여 인권이라는 큰 틀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적 인프라 구축 및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환류체제 구축 마련

본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인권정책을 추진한 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반성과 환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인권표준화지표 개발 적용, 학생인권영향평가제, 학생인권실천 사례 발표회, 학생인권상담 사례집 발간 보급, 학생인권홍보체제 마련, 정기적인 인권정책 점검 협의회, 전

라북도 중장기적인 인권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 환류체제 마련 등 지속발전가능한 인권정책 평가 환류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전라북도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학교 마을 연대 구축

무엇보다도 전라북도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이 증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학교 내외 구성원의 인권적 태도가 형성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구성원들 간의 인권감수성이 증진되어야 한다. 인권중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인권친화적인 수업설계, 마을과 연계된 다양한 인권캠프,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등의 다양한 활동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연대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경기도교육청(2016). 2016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 2016-07.

강순원(2000). 평화ㆍ인권ㆍ교육. 서울:한울아카데미.

강순원ㆍ김종수 외(2003).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 서울:해오름

구정화(2015). 청소년을 위한 인권에세이. 서울:해냄

구정화(2017). 고등학생의 청소년 노동권리 인지 및 침해경험 관련 요인 분석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방안 탐색을 위하여-. 법과인권교육연구. 10(2). 107-133.

구정화외(2004).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06). 인권상황실태조사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김두식(2007). 평화의 얼굴. 서울:교양인

김성재외(2002). 인권시대를 향하여. 서울:나남출판

김숙자ㆍ김현정(2010).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 서울:공동체.

김정래(2002). 아동권리향연. 서울:교육과학사.

류은숙(2012). 인권을 외치다. 서울:푸른숲

문미희(2005).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한국학술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역(2000). 현대사상과 인권. 서울:사람생각

서울시교육청(2018). 학생인권종합계획 2018-2020에 따른 2018년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증진 시행계획.

심성보(2014). 민주시민을 위한 도덕교육. 서울:살림터.

심성보외(2002).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연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오동선(2015). 아이를 빛나게 하는 학교인권. 서울:아카데미프레스.

우리교육(2013). 학교에 숨은 인권을 찾아라. 통권253호.

이은진(2018). 인권수업. 교실, 인권을 만나다!. 서울:지식프레임.

인권교육센터들(2011). 학생인권쟁점탐구 인권 교문을 넘다. 서울:한겨레 에듀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2003). 얘들아, 인권 공부하자. 서울:사람생각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2003).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서울: 우리교육.
전라북도교육청(2015). 2015 학생인권실태조사 설문문항 개발 보고서.
정광욱외(2013). 서울대 인권수업. 서울:미래의 창
조금주(2016). 학생인권조례 분석 및 학생인권 조사 개발 방향. 청소년학연구. 23(2). 299-320.
조효제(2012). 인권의 문법. 서울:후마니타스
최형규외(2012). 가장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학생인권이 교육에 묻다. 서울: 교육공동체벗
충청남도교육청(2000). 중학생과 함께하는 민주 인권교육.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I2000-2.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2017). 2017 충남 학생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 시민사회자료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인권론. 서울:교육과학사.

부 록

온라인 설문지

2017 전라북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초등학생용)

안녕하세요.

전라북도교육청은『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013년에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본 실태조사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결과는 조례에 따라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평소 학생인권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답해주세요.

또한 응답한 내용은 통계로만 사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12월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I. 다음은 학생인권보장 제도에 대해 묻습니다.

1.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① 잘 알고 있다 ② 일부 내용을 알고 있다 ③ 이름만 알고 있다 ④ 처음 들어 본다

2.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3. 전라북도교육청에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나요?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Ⅱ. 학생인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4.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5. 학교에서 학생들은 인권을 보호받는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6. 교사는 학생이 잘못하면 체벌을 할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7.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을 규제해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8. 수업중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어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9. 학생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0. 공부를 잘 하면 급식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Ⅲ.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11. 우리 학교는 반성문이나 각서를 강요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2. 우리 학교는 도난사고를 이유로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검사를 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3. 우리 학교는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조건(성적, 출결, 징계 등)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4. 우리 학교는 학교 행사를 학생들이 계획하고 진행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5. 우리 학교는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을 규제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6. 우리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는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7. 우리 학교는 학생의 성적으로 차별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8.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를 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9. 우리 학교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0. 우리 학교는 방과후 학교를 강제로 해야 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1. 우리 학교는 학교게시판이나 누리집(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의견을 쓸 수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2.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3. 우리 학교는 보건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4. 우리 학교는 학생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한 번도 없다 ② 1년에 1시간 ③ 학기마다 2시간 이상

Ⅳ. 2017년 올해 학교나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25. 나는 학교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일년에 1~2회 정도	③ 한달에 1~2회 정도	④ 1주일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3회 이상

26.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 체벌에는 회초리 등의 도구나 손, 발을 이용한 폭행, 팔굽혀 펴기, 오리걸음 걷기 등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벌과 단체 기합 등을 포함합니다.

① 없다	② 일년에 1~2회 정도	③ 한달에 1~2회 정도	④ 1주일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3회 이상

27.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일년에 1~2회 정도	③ 한달에 1~2회 정도	④ 1주일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3회 이상

28.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일년에 1~2회 정도	③ 한달에 1~2회 정도	④ 1주일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3회 이상

Ⅴ. 다음은 학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9. 학생의 학년은?

① 4학년 ② 5학년 ③ 6학년

30. 학생이 현재 다니는 학교의 지역은?

① 시지역 ② 군지역

Ⅵ. 기타 학생인권에 대해 느낀 점이나 건의할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7 전라북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중·고등학생용)

안녕하세요.

전라북도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013년에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이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본 실태조사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결과는 조례에 따라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평소 학생인권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답해 주세요.

응답한 내용은 통계로만 사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12월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I. 다음은 학생인권보장 제도에 대해 묻습니다.

1.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① 잘 알고 있다 ② 일부 내용을 알고 있다 ③ 이름만 알고 있다 ④ 처음 들어 본다

2.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3. 전라북도교육청에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나요?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Ⅱ. 학생인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4.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5. 학교에서 학생들은 인권을 보호받는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6. 나는 인권감수성이 높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7. 학생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8. 학생은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9. 수업중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해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0.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을 규제해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1. 교사는 학생이 잘못하면 체벌을 할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2. 성적이 우수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Ⅲ.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13. 우리 학교는 지도방법으로 반성문이나 각서를 강요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4. 우리 학교는 흡연이나 도난사고를 이유로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검사를 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5. 우리 학교는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조건(성적, 출결, 징계 등)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6. 우리 학교는 학교 행사를 학생들이 기획하고 진행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7. 우리 학교는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을 규제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8. 우리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9. 우리 학교는 학생의 성적으로 차별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0.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를 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1. 우리 학교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2. 우리 학교는 방과후 학교 또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하고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3. 우리 학교는 학교게시판이나 누리집(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의견을 쓸 수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4.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5. 우리 학교는 보건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6.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① 그렇다(26-1.에 답해 주세요) ② 아니다

26-1.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① 그렇다(26-2.에 답해 주세요) ② 아니다

26-2. 나는 다음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중복 선택)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 ② 일방적인 해고 ③ 약속한 급여 미지급 ④ 최저임금(2017년도 기준 시급: 6,470원) 미만 ⑤ 인권침해(성폭력, 욕설, 폭력, 차별 등) ⑥ 정해진 근무시간 위반 ⑦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27.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8. 우리 학교는 학생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한 번도 없다 ② 1년에 1시간 ③ 학기당 2시간 이상

29. 현재 우리나라 선거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선거권 연령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① 현행 만19세 유지 ② 만18세 ③ 만17세 ④ 만16세 ⑤ 모르겠다

Ⅳ. 2017년 올해 학교나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30. 나는 학교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일년에 1~2회 정도	③ 한달에 1~2회 정도	④ 1주일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3회 이상

31.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 체벌에는 회초리 등의 도구나 손, 발을 이용한 폭행, 팔굽혀 펴기, 오리걸음 걷기

등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벌과 단체 기합 등을 포함합니다.

① 없다	② 일년에 1~2회 정도	③ 한달에 1~2회 정도	④ 1주일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3회 이상

32.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일년에 1~2회 정도	③ 한달에 1~2회 정도	④ 1주일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3회 이상

33.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일년에 1~2회 정도	③ 한달에 1~2회 정도	④ 1주일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3회 이상

Ⅴ. 다음은 학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34.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선택하여 주세요.

① 공립 중학교 ② 사립 중학교 ③ 공립 고등학교 ④ 사립 고등학교

35. 학생의 학년은?

① 중1학년 ② 중2학년 ③ 중3학년 ④ 고1학년 ⑤ 고2학년 ⑥ 고3학년

36. 학생이 현재 다니는 학교의 지역은?

① 시지역 ② 군지역

Ⅵ. 기타 학생인권에 대해 느낀 점이나 건의할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7 전라북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교원용)

안녕하세요.

전라북도교육청은『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013년에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본 실태조사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결과는 조례에 따라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평소 학생인권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한 내용은 통계로만 사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12월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I. 다음은 학생인권보장 제도에 대해 묻습니다.

1.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① 잘 알고 있다 ② 일부 내용을 알고 있다 ③ 이름만 알고 있다 ④ 처음 들어 본다

2.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3. 전라북도교육청에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나요?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Ⅱ. 선생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4. 학교운영에 교사들의 참여가 높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5. 학교에서 교사들은 인권을 보호받는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6. 나는 인권감수성이 높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7. 학생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8. 학생은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9. 수업중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해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0.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을 규제해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1. 교사는 학생이 잘못하면 체벌할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Ⅲ. 학생인권에 대해서 묻습니다.

12. 우리 학교는 지도방법으로 반성문이나 각서를 강제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3. 우리 학교는 흡연이나 도난사고를 이유로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검사를 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4. 우리 학교는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조건(성적, 출결, 징계 등)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5. 우리 학교는 학교 행사를 학생들이 기획하고 진행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6. 우리 학교는 학생의 두발 및 용의복장을 규제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7. 우리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8. 우리 학교는 학생의 성적을 공개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9.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를 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0. 우리 학교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1. 학생이 아르바이트 등 노동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2. 우리 학교는 교사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한 번도 없다 ② 1년에 1회 ③ 학기당 1회 ④ 수시로

Ⅳ. 선생님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23. 교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중복응답 가능)

※ 현행법에서는 교원에게 정당가입이나 정당후원, 공직선거 출마,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① 현행유지 ② 정당가입 ③ 정당후원 ④ 공직선거 피선거권 ⑤ 선거운동 허용

⑥ 기타

24. 선거권 연령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① 현행 만19세 유지 ② 만18세 ③ 만17세 ④ 만16세 ⑤ 잘모르겠다.

Ⅴ. 다음은 선생님에 관한 사항입니다.

25. 선생님이 재직중인 학교를 선택하여 주세요.

① 초등학교 ② 공립 중학교 ③ 사립 중학교 ④ 공립 고등학교 ⑤ 사립 고등학교

26. 선생님의 근무 년수는?

① 4년 이하 ② 5년 이상-9년 이하 ③ 10년 이상-19년 이하 ④ 20년 이상

27. 선생님이 현재 근무하시는 지역은?

① 시지역 ② 군지역

Ⅵ. 기타 학생인권에 대해 느낀 점이나 건의할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7년

전라북도 학생 인권 실태 조사

인 쇄 일	2017년 12월
발 행 일	2017년 12월
발 행 처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http://www.jbe.go.kr>
연구기관	(재)한국교육문화재단
인　　쇄	㈜ 담백한 사람들